I. 구미세력의 침투

- 1. 19세기 중반기의 동아시아 정세
- 2. 구미 열강의 통상요구

I. 구미세력의 침투

1. 19세기 중반기의 동아시아 정세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정세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지역에서 장구한세월에 걸쳐 존속하여 온 농업경제에 의거한 전통적 세계질서가 이른바 서세동점의 거센 물결 앞에서 동요, 붕괴하기 시작하고 이 지역 내 각국이 서구 열강의 압력 앞에서 그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세계역사상의 큰 변혁은 이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이미 근세 초기, 즉 16세기 초두에 시작한 서구제국의東方進出 결과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 안에 존재했던이른바 중국적 세계질서와 그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를 고찰해 본 다음, 서방 제국의 동방진출이 시작된 배경과 경위 및 그 과정을 살펴보고, 끝으로 19세기초부터 서세동점의 물결, 즉 '西洋의 衝擊'이 東아시아제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다루기로 한다.

1) 한・중・일의 정세

(1) 화이사상과 중국의 조공제도

19세기 초기의 東아시아는 극히 제한된 무역을 제외하고는 서방세계와 거의 교섭이나 접촉이 없는 폐쇄된 天地였다. 이 東아시아에는 中國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를 華夷秩序라고했다. 이 화이질서는 세계를 單一帝國으로 간주한 고대 中國人이 문명이 발달한 자기들을 '華' 또는 '中華'라 하고, 문명이 뒤떨어진 주변 異民族을 '夷' 또는 '四夷'(東東·西戎・南蠻・北狄)로 구별한 사상과 인류사회에는 신분의 상

하와 지위의 우열을 구분하는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화이질서는 중국을 宗主國으로 하고 모든 이민족 사회나 국가를 그 '藩屬' 또는 '屬邦'으로 하는 宗屬體制에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 체제는 종 주국인 중국과 속방 또는 번속과의 관계를 조직관리하는 중국의 朝貢제도에 의하여 우영되었다.1)

중국을 중심으로 한 東아시아 세계질서는 漢 王朝(前漢: BC 206~AD 8;後漢: AD 25~221)시대에 그 原型이 형성되었다. 그후 천 수백 년에 걸쳐 중국 대륙에서 분열과 통일이 번복되고 여러 왕조가 교체되었으며 특히 여러 북방 이민족이 수립한 '征服王朝'가 등장하여 漢민족의 우월성에 관한 神話가무너짐에 따라 화이질서도 동요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의조공제도도 우여곡절과 消長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14세기 후반에 漢민족에 의한 강력한 통일 왕조인 明(1368~1644)이 등장하자 중국에서는 화이질서가 회복되고 동아시아 천지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다시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중화제국의 종속체제와 조공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이때정비된 체제와 제도는 그후 19세기말에 가서 마지막으로 붕괴될 때까지 크게 변합없이 지속하였다.

(2) 조선왕조와 청조: 청한 종속관계

17세기 전반에 중국에서는 明朝가 멸망하고 북방 胡族의 정복왕조인 淸朝가 등장하는 왕조교체가 일어났다. 조선도 불가피하게 이에 휩쓸려 들어가 丁卯胡亂(1627)과 丙子胡亂(1636)이라는 국난을 겪게 되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그때까지 野人으로 멸시하여왔던 女眞(胡)族이 세운 청조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큰 굴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 주변에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청조의 통치자들은 명조의 문물과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청조는 건국 초기의 강압과 대결이 끝나자 양국

¹⁾ 古代 中國의 天下思想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많이 있는바 국내에서는 金翰 奎,《古代 中國的 世界秩序 研究》(一潮閣, 1982). 그리고 국외에서는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등이 있다.

간의 정상적인 종속관계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淸韓 종속관계는 조선의 君臣들의 끈질긴 '崇明反淸' 감정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까지 2백 수 십 년간 대체로 평화롭고 원만하게 지속되었다.

청한 종속관계에는 의례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있었다. 전자에는 중국황 제와 조선국왕 간의 군신관계를 상징하는 사절과 예물의 교환 및 의례의 遵 行이 있었고 후자에는 이에 수반한 교역이 있었다. 조선에서 새로운 군주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청조에 奏請使를 파견하여 황제의 책봉을 청했다. 이에 황제는 그를 조선국왕으로 책봉한다는 誥書를 내리고 册封使를 서울에 파견 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양자간에 군신관계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조선은 정기적으로 조공사를 청조에 파견하였는데 청조 초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차 冬至 때 파견하였기 때문에 이를 冬至使라고 통칭하였다. 동지사 외에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임무를 띤 사절을 파견하였다. 중국에서 도 책봉사 이외에 각종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이는 부정기적이었으며 그 회 수도 많지 않았다. 조선국왕이 사절을 파견할 때는 반드시 方物, 즉 조선의 土産物을 貢物로 獻上하였으며 중국황제는 回賜品을 하사하는 예물교환이 수반하였다. 종주국에 대한 臣服의 상징으로 조선은 중국황제가 제정한 曆法 을 사용하고 모든 공문서에는 皇帝 年號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의례적 관계에 수반하 교역이 있었다. 조선의 朝貢使 일행이 북경 會同館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간 물품을 팔고 중국 물품을 사 는 이른바 회동관 무역이 허용되었다. 반면 淸朝의 使行이 서울에 머무는 동 아 교역에 종사하지 않았다. 이외에 邊方무역이라고 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 에 양국의 상인들이 양국간의 국경에 있는 中江・會寧・慶源에 모여서 물물 교화 형식의 교역을 하였다. 이 외에 양국간에 어떠한 人的, 物的 교류도 없 었다.2)

청한 종속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종주국인 중국의 서열상의 우위였다. 청한간의 초기에 있었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된 反淸감정에 도 불구하고 조선이 정면으로 청조의 우위를 부정하거나 이와 대등한 지위

²⁾ 淸韓朝貢제도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全海宗, 《韓中關係史硏究》(一潮閣, 1970), 59~112쪽.

를 주장한 적은 없었다. 韓中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父子나 兄弟 간에서 父兄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우위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양자간의 서열상 구별과는 관계없이 양자간의 상호 불간섭의 원칙이었다. 이는 조선은 속방이나 '政敎禁令은 自主'라는 말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종주국으로서 의례상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속방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하거나 실제로 지배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종주국의 권한은 '字小以德'으로, 속방의 의무는 '事大以禮'로 표현된 것과 같이 도의적인 것이므로 양자간 관계의 근본 정신과 원칙은 결코 '힘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아니었다.3)

(3) 조선왕조와 일본: '교린'관계

한일관계도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이 역시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15세기 초였다. 14세기 후반에 明朝가 등장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室町)幕府의 지위와 권위가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조선의 太宗 李芳遠이 명조로부터 조선국왕에 책봉된 다음 무로마찌막부의 제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도 명조에 入貢하여 1403년에 중일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日本國王'에 책봉되었다. 조선과 일본이 동시에 明의 조공제도에 편입되어 명의 조공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1404년에는 조선과 일본은 기존관계를 정리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이때 형성된 한일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 하나는 양국의 통치자, 즉 조선 국왕과 일본의 장군이 다 같이 명조의 책봉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위가 서로 동등하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또 하나는 중앙집권국가 조선은 국왕이 유일한 통치권자로 일원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하는 반면, 봉건체제하의 일본에서는 중앙정권의 장군 이외에 세습 領主들이 각각 지방분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여 조선과 독자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즉 조선의 대일관계는 일원적으로 관리되었으나 일본의 對 조선관계

³⁾ Key-Hiuk Kim,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Berkeley and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880), pp.4~15.

는 다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왕조와 교토(京都)에 있었던 일본 왕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天皇은 통치권이 없는 단순한 명목상의 국가원수였으며 토속신앙인 신또(神道)의 敎祖的인 존재에 불과하였다는 것과, 중앙정권인 幕府의 힘과 권위가약하여 일원적인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조선왕조가 이와 같이 일본과 다원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은 일본 서남지방의 영주나호족들에 명목상의 官職 또는 印綬를 수여하여 이들에 외교와 무역상 일정한 특권을 주고 그 대가로 한반도 해역에서 그들의 침범과 약탈을 억제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受職倭 또는 受圖書倭라고 불린 이들은 조선국왕에 대하여 단순한 陪臣이 아니라 '準 臣下'였다.4

조선 초기 형성된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그 후 한반도 해역에서 倭寇활동이 꾸준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없이 계속되다가 16세기 末에일어난 壬辰倭亂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란이 종식된 직후 일본에서 토쿠가와(德川)幕府가 등장한 후 1609년에 이른바 己酉約條가 체결되어양국간의 정식 국교가 재개되었다. 기유약조는 1876년에 江華島條約이 체결될 때까지 약 260년 동안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남아 있었다. 이 약조에의하여 조선은 일본과 두 가지 차원의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하나는 막부와의 관계였고 또 하나는 위에서 말한 수직왜와 수도서왜와의 관계였다.

막부와의 관계는 조선측에서 막부에 사절을 파견하여 書契와 예물을 교환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사절을 通信使라 하였는데 통신사는 장군이 사망하고 새 장군이 承襲할 때 조의와 축하의 뜻을 전하는 국왕의 서한과 예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막부의 소재지인 에도(江戶)에 파견되었다. 토쿠가와 시대전 기간을 통하여 통신사는 12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19세기초에 재정난으로 어렵게 된 막부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에도가 아닌 타처에서 통신사를 영접하자는 이른바 易地行聘을 제의했으나 조선측이 이를 거절한 결과 통신

⁴⁾ 아시카가시대의 한일관계에 관하여는 田中健夫、《中世對外關係史》(東京:東京大學 出版會, 1975), 95~152쪽과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研究》上(東京:吉川弘文館, 1970), 141~221쪽, 受職倭와 受圖書倭에 관하여는 같은 책, 517~626쪽 참조.

사 파견은 폐지되었다.5)

토쿠가와막부도 조선에 사절을 파견코자 했으나 임진왜란으로 극도로 증폭된 對日 불신감으로 조선 조정이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막부의 조선조정과의 연락은 對馬島 영주가 이를 대행하였다. 그 결과 토쿠가와시대에 일본인은 공적이나 사적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서울을 방문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조선조정과 막부간의 관계는 의례외교에 불과하였으며 통신사는 청조에 파견된 조공사와는 달리 의무적이나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막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파견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대마도와의 관계는 조선측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정기로 譯官을 파견 하였는데 이를 渡海역과 또는 問慰역관이라 했다. 이들의 사명은 새 영주의 승습을 축하하거나 島內 사정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단기간 체재하 였으며 주어진 임무 이외의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반면 대마도는 매년 年例使라고 불린 정기사절과 別差倭라고 불린 임시사절을 보냈다. 연례사는 島主가 장군을 대행하여 보내는 大差使와 그 자신이 영주자격으로 보내는 差使, 그리고 수직왜 및 수도서왜가 보내는 사신이 있었다. 별차왜는 양국간 에 단순한 연락사항이 있을 때 파견되었다. 이들은 조선 禮曹參判과 東萊府 使 또는 그들의 屬僚들에 보내는 書契와 조선조정에 헌상하는 명목적인 예 물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한 回賜品을 하사받았다. 모든 서계에는 조선의 종주국인 中國의 皇帝 年號와 조선왕국으로부터 하사된 官印(圖書)을 사용해 야 했다. 대마도에서 도래하는 일본인들은 부산 草梁에 있었던 倭館에서 정 해진 범위 내에서 물물교화 형식의 교역에 종사였다. 그러나 館外出入이나 여행은 일절 금지되어 있었다. 왜관은 조선정부가 설치한 것이었으나 그 관 리는 대마도 영주가 임명하는 館守에 맡겼다. 왜관에 와서 체류하는 일본인 은 매년 1.000명이 넘었으며 조선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매년 쌀 3.000石을 제공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마도는 경제적으로는 일본 본토보 다 조선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토쿠가와 초기에는 조선조정과 이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영주들이 일본

⁵⁾ 通信使 易地行聘에 관하여는 田保橋 潔,《近代日鮮關係》下卷(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639~894쪽 참조.

서남지방에 여럿이 있었으나 도쿠가와 중기에 들어선 후 17세기 말까지 이들이 모두 그 관계를 청산하게 되어 이 때부터 대마도는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6)

(4) 화이질서하의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천지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7세기초 唐왕조(608~917) 초기였다. 이때 중국대륙에서 後漢이 멸망한 후 400여년 가까이 계속된 분열과 혼란이 끝나고 다시 통일왕조인 隋와 唐이 차례로흥기하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둘러 그들과 對冊관계를 맺었다. 이때 일본도 이들에 사절을 파견하여 入貢했으나 정식으로 책봉관계는 맺지 아니했다.한반도 삼국과 일본간의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각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리적·전략적 입지의 차이에서유래한 것이었다. 즉 중국대륙에서 강대한 세력이 흥기하여 외교적·군사적으로 직접 그 영향과 압력을 받게 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재빨리 이와 외교적 관계를 확립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대륙에서 거리가 먼 도서국가 일본은 외교상·전략상 훨씬 더 큰 선택의 폭과자유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동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새 대륙세력과 외교관계는 맺었으나 구속적이며 의무적인 책봉관계까지 맺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후 唐이 직접 한반도에 개입하여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을 지원한 다음 이를 자기 판도에 편입하려 했으나 통일신라의 완강한 항거에 봉착하여실패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적대관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양국간에는 곧 종속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후 신라는 계속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선진문화를 도입하여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게 하였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되자 그의 반도 진출 기도가 좌절되고 한 가닥의 희망을

⁶⁾ 토쿠가와시대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孫承喆, 《近世韓日關係史》(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George M. McCune, "The Exchange of Envoy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Tokugawa Period." *The Far Eastern Quarterly*, 5.3(May 1946), pp.308~324 등이 있다.

걸었던 羅唐戰爭까지 끝나고 나당간에 우호관계가 회복되자 자신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급격히 냉각되었다. 당왕조 300년간을 통하여 신라는 나당전쟁 때의 수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사절을 보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같은 기간에 전후 15차례의 사절을 파견하는데 그쳤다. 이 중 초기의 6회는 630년부터 약 40년간에 집중되었는데 이 때는 바로 삼국 통일전쟁이 일어나고 당이 이에 개입한 시기였다. 나머지 9회는 그 후 약 170년 동안 20년만에 한번 꼴이었으며그 마저 838년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일본이 당에 입공했던 것은 대륙의 선진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 일본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사실은 그 목적이주로 전략적인 것이었으며 문화도입은 2차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7) 이와같이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이면서도 항상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는 그 후 더욱 분명해진다. 당이 멸망한 후 중국에서는 宋王朝(960~1279)가 이를 이었다. 군사적으로약했던 송은 북방민족의 국가인 遼와 숲의 압력 하에 동아시아 세계의 종주국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中原에서 남쪽으로 밀려나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화이질서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통일신라를 계승한 고려는 송과 꾸준히 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그 문화를 도입하는데 힘썼다. 특히 유학발달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程朱學을 도입하여 훗날 한국유학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한편 일본은 9세기 중엽 이후 계속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고 민간 차원의 문화적 교류는 어느 정도 유지했다.

13세기 중엽에 全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사상 未曾有의 대변동이 일어났으니 바로 蒙古에 의한 元제국의 창건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30년간에 걸친 치열한 항쟁 끝에 결국 몽고에 굴복하고 직접 그 지배를 받게 되었다. 뒤이어 일본도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았다. 그러나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麗蒙 연합군의 일본 침공은 완전한 실패로 끝

⁷⁾ 西嶋定生,《日本歷史と國際環境》(東京:東京大學 出版會, 1895), 81~180쪽 참조.

났다. 몽고에 의한 중국정복과 통치는 灌민족의 화이사상과 덕치주의에 치명 적인 타격을 주고 전통적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무너뜨렸다. 하편 몽고의 일 본 침공은 일본인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단결을 강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일본의 '승리'는 일본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아 주었다.

15세기초에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明朝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목적 은 주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중국무역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중 국 문물의 도입에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로 말미암아 국내 王廷귀족들과 神道 神官들의 비난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의 아시카가 장군들은 명조와의 종속관계를 단속적으로 유지하였는데 16세기 중엽에 가서 그들의 정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明과의 종속관계도 자연 소 멸했다. 그러나 토쿠가와 정권은 조선과 琉球 왕국을 통하여 비공식으로 중 국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도 분명히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남 아 있었다.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고대 동아시아 세계질서가 형성된 후 언제나 그 테두리 안에서 중국과 불가분의 유대를 유지하였다. 특히 중국과 동질적 인 문화를 발전시켜 '小中華'라고 자타가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의연한 태도로 완전히 자주를 고수하고 중국의 간섭을 거절하였다. 중국도 元(몽고)왕조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통치하거나 그 내외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도 중국문화를 도입하여 자체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나 항상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식적인 국교를 유지하려고 힘쓰지 않 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각각 상대방에 대한 고정된 견해 또는 편견 이 굳어지게 되었다. 즉 중국과의 문화적 일체감을 갖고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도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 을 갖게 되었다. 하편 예로부터 단속적으로 일본인의 일방적인 침범과 약탈

⁸⁾ 일본역사와 문화의 독립적 발전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토인비(Arnold I. Toynbee)와 케네디(Paul Kennedy)가 있다.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l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New York, N.Y.: Random House, 1987), pp.14~16 참조.

을 받아온 한국인은 일본인을 도덕적으로 야만으로 보게 되고 그에 대한 불신감이 굳어졌다. 특히 임진왜란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감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한편 일본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의 문화적 선진성과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고 한국에 대하여는 우위를 주장하였다. 일본 고유의 신화와 일본왕실의존재가 일본인의 이와 같은 견해와 태도를 지탱케 하였으며 일본의 島嶼國家로서의 지리적·전략적 위치가 이를 가능케 하였다.

예로부터 중국의 통치자는 이른바 '天命'을 받아 천하를 통치하고 인류에 군림하는 '天子'라 하여 '皇帝'라고 불렀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나 민족의 君主나 首長도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이 자국의 왕을 '天皇'이라고 불러왔다. 물론 타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같은 慣用은 일본인의 대외관계에 대한 사고를 형성하는데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 고대 史書인 《日本書紀》에는 고구려,백제, 신라왕이 일본의 야마도(大和)조정에 입공 하였다는 날조된 기사가 실려 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후세 일본인은 한반도가 고대 일본의 속국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일본에서 武家통치가 끝나고 이른바 '天皇의 親政'이 '회복'되었을 때 바로 이 때문에 한일 양국간에서 각자의 君主가 호칭을 둘러싸고 외교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서세 동점과 동아시아 제국

(1) 서방제국의 동방진출

이른바 西勢東漸은 근세 초두, 즉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시작된 유럽제국의 동방진출로 출발했다. 그 배경에는 13~14세기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한 蒙古帝國의 붕괴에 이어 15세기 중엽의 오스만 투르크의 홍 기와 이로 인한 東로마제국의 멸망으로 비단길(the Silk Road)이라고 불려진 동 방 교역로가 回敎徒와 아랍상인들 수중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로 말

⁹⁾ Kim, The East Asian World Order, pp.23~25.

미암아 13세기 중엽 이래 동방무역으로 번영하여온 地中海 연안 기독교국가 상인들은 인도와 중국. 즉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해야만 했다. 바로 이를 위한 노력으로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大航海 時代'이자 大發見 時 代가 개막되었다. 그 시작이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美洲大 陸 발견과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의 印度航路 발견이었다. 이 를 가능케 한 것은 근세 초기에 시작된 과학혁명의 일환으로 천문학과 항해술 의 획기적인 발달과,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개된 유럽 근대민족국가 간의 식 민지 획득 경쟁이었다. 또 이 경쟁에 박차를 가한 것이 종교개혁과 이에 대응 하여 일어난 가톨릭 교회 자체의 개혁운동, 즉 反改革운동(the Counter Reformation)이며 그 일환으로 전세계에 걸쳐 전개된 천주교의 포교활동이었 다. 이와 같이 근세 유럽제국의 동방진출은 유럽상인들의 동방무역, 유럽국 가들의 해외 식민지획득 경쟁과 가톨릭 교회의 포교운동이 합쳐서 이루어진 세계사상의 미증유의 대사건이었다.10)

(2)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동방진출

이 동방진출에서 선두에 나선 것이 이베리아반도 국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었다. 1493년 12월 敎皇 알렉산더 6세가 새로 발견될 모든 지역을 유럽대 륙 서쪽 대서양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子午線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스페인 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영유케 한다는 敎書를 발표하였다. 양국은 이 교서의 내용을 다음 해인 1494년에 조인한 톨더실래스(Tordesillas) 조약으로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포트투갈은 아프리카대륙 서해안을 남하하여 希望峰을 동으 로 돌아 印度洋에 진출, 다시 북상하여 아랍해를 거쳐 인도 서해안에 도달하 였다. 1510년에는 인도의 고아(Goa)를 점령하여 이곳에 동남아의 香辛料무역 기지를 건설하였다. 다시 南支那海를 북상하여 중국 남부해안 항구들을 占取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축출당했다. 그러다가 1557년에 중국 해역에서 해적 소탕에 공을 세워 明朝로부터 마카오(Macao)에 무역기지 건 설허가를 취득하였다.11)

¹⁰⁾ 榎 一雄、〈西力東漸の展開〉(榎一雄 編、《西歐文明と東アジア》, 東京:平凡社, 1971), 9~18쪽 참조.

한편 스페인은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에 진출하여 1519~1520년에 멕시코 (Mexico)를 점령하고 이를 본거지로 삼아 중남미대륙 정복을 활발히 추진하 였다. 남미대륙 북부의 파나마 地峽을 횡단. 서해안으로 진출하여 1530년대 초에는 페루(Peru)를, 1540년대에는 칠레(Chili)를 정복하였다. 그후 1세기 동 안 이 지역은 세계최대의 銀 산지가 되어 스페인의 번영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에 앞서 1519~1521년 마젤란(Magellan)이 남미대륙 남단에서 태평양을 서 쪽으로 횡단하여 比律賓을 발견하였는데 스페인은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하 여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무역의 기지로 하였다. 이와 같이 16세기 중엽까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17세기 초까지 이 지 역 전 해역에서 制海權을 장악하고 해상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12) 이와 같이 양국이 동아시아에서 쉽사리 해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당 시 중국・한국・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이 이른바 '海禁' 정책 하에서 '閉關 自守'하고 해외교류와 내왕을 금하거나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세기 초에 중국의 明朝는 宦官 鄭和가 이끄는 대 함대를 전후 7차에 걸쳐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 파견하여 이를 중국 조공체제에 편입시켰 다. 1405년의 제1회 원정은 60여 척의 함정과 28,000명의 병사가 동원된 世 界史上 미증유의 규모였다. 만일 명조가 해상활동을 계속하였더라면 당시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그 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1433년을 마 지막으로 명조는 해외 대원정을 갑자기 중단하고 그 후에는 해안해역에 출 몰하는 왜적소탕을 위한 해군력만을 유지하였다.13)

원래 대륙국가인 중국은 수만 리의 해안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 세기 초까지 해상으로부터 군사적 협위를 받은 적이 없었다. 역사상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나 무력 침입은 항상 북방초원이나 서북사막 지대에서

¹¹⁾ 포르투갈의 동방진출에 대하여는 生田 滋, 〈大航海時代の東アジア〉(위의 책), 19~144쪽 참조.

¹²⁾ 스페인의 해외진출을 다룬 것으로는 J. H. Parry, *The Spanish Seaborne Empire*(Berekely, Los Angeles, and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¹³⁾ 明朝초기의 大遠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ung-pang Lo, "The Emergence of China as a Seapower During the Late Sung and Early Ming Periods," Far Eastern Quarterly, 11: 2(February, 1952) 참조.

왔다. 또 중국은 예로부터 탁월한 문화와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다양한 물산을 자랑하는 자급자족의 농경사회였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국방을 위한 해군력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타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경제적 부를 획득하기 위한 해외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다. 명조가 해외 대 원정을 갑자기 그만두고 해군력을 축소한 배후에는 이와 같은 중국인의 전통적인 국방전략과 문화적 中華思想이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명조의 결정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용이하게 동아시아해역에 진출하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근세 초기 유럽국가의 동방진출의 또 하나의 동기는 천주교의 포교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을 떠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무장船團에는 온 세계를 기 독교왕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정열에 불타는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다. 이 들은 포르투갈ㆍ스페인 또는 프랑스 왕실의 재정적 지원으로 조직된 교단에 소속하고 있었는데, 그 중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 활동을 전개한 것이 耶 蘇會(the Society of Jesus)였다. 야소회는 통칭 '제수위트'(the Jesuits)라고 불린 교단으로 포르투갈 왕실의 지원으로 유럽 각국의 귀족과 명문출신의 일류 학자와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저명한 사람이 聖 프랜시스 사비엘 신부와 마테오 릿치(Matteo ricci) 신부였다. 사비엘은 이태 리 귀족 출신으로 1549년에 일본 땅을 밟았다. 그는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쿠슈(九州), 야마구치(山口), 교토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 고 그후 반세기 동안에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천주교로 개종하게 되는 터전 을 마련했다. 릿치 신부 역시 이태리의 명문 출신으로 1582년에 마카오에 도 착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중국의 언어, 풍속, 역사를 공부한 다음 廣州・南京 등지를 거쳐 1598년에 北京에 들어갔다. 1610년 그곳서 사망할 때까지 헌신 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천주교 포교뿐만 아니라 동서문화 교류에도 큰 공적 을 남겼다.

이와 같이 천주교는 주로 야소회 선교사들에 의하여 중국과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당시 일본은 전국에 군 웅이 할거하여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기성 종교인 神道와 불교는 혼란과 고 난 속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때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 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빛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도 야소회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明朝 말에서 淸朝 초기에 걸쳐 천주교는 북경 조정과 상류사회에까지 침투하여 착실하게 그 영향력이 커져가서 많은 名流들을 개종시켰다. 일부 선교사들은 황제의 신임을 얻어 청조의 높은 벼슬까지 했다. 청조가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을 묵인하고 그들을 관직에 등용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다만 天文學, 曆學에 관한 그들의 과학적 지식과 회화와 같은 예술분야에서의 기능을 중용한 것이었다. 한편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유교사상을 받아드린 것이 아니었고 중국사회에 기독교를 전파시키자면 모름지기 중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배계급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소회 선교사들은 당시 중국과 서양문화의 교류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14)

이와 같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은 동방진출의 선두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에 들어서자 그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천주교 포교 활동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명조와 청조의 관용으로 포교활동이 묵인되었으나 교단 상호간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로마교회의 배타주의와 독 선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축출당하고 말았다. 일본에서도 사정은 대동소이 하였다. 초기에 포르투갈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일본에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일본 국내사정의 혼란에 의한 것이었으나 일단 일본 국내가 다시 통일되고 질서가 회복되자 선교사들은 축출되고 상인들은 엄격 한 통제하의 한곳에 모은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근세 초기 유럽諸國의 중국 과 일본 진출은 이들 국가의 용인과 필요에 따라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는 그후 약 200년 동안 크게 변합없이 19세기초까지 계속되었다.

¹⁴⁾ 야소회의 중국 포교활동에 관하여는 George H. Dunne, S. J., Generation of Giants: The Story of the Jesuits in China in the Last Decades of the Ming Dynasty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와 Jonathan Spence, To Change China: Western Advisers in China, 1620~ D1960(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9)을, 일본에서의 활동에 관하여는 George Elison, Deus Destroyed: The Imag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Japa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등을 참조.

근세 초기에 중국과 일본이 유럽인들과 새로운 접촉을 갖고 무역을 하게 된 시기에 조선은 그들과 아무런 접촉도 없이 '閉關自守'하고 있었다. 그 이 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였다고 생각 된다. 당시 동아시아에 도래한 유럽인들의 목적지는 주로 중국이었으며 그 것도 주로 남중국이었다. 따라서 한반도는 일본 남부지방과는 달리 국제항 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유럽인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알고 있었다해도 보잘것 없는 중국대륙의 일부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인들 자신의 외부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16세기 전반은 바로 명과 조선의 초기로 동아시아 세계질서 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시기였다. 조선의 통치계급으로 등장한 士大夫들은 程朱學을 신봉하고 국내정치나 대외관계에서 '중국 일변도'였다. 그들은 일 본에 대하여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무관심하였으며 국내정치나 대외관계에 서 이와 동조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만일 당시 명조가 해금 정책을 포기하고 유럽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서방과의 교역에 좀더 적극적 이었다면 조선의 관심도 그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3) 일항 무역: 전통적 동서무역 제도

16세기초에 유럽인들이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했으나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식교역은 미미한 것이었고 밀무역이나 해적행위가 주였다고 생각된다. 이 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양국의 海禁정책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후 중국에서는 국내가 안정됨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고 物資유통이 활발 하게 되자 해외통상 요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연해지역 주민간에는 해 외밀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포르투갈인이 중국해역에 나타나 서 浙江・福建・廣東近海에서 밀무역을 시작하자 중국인들도 이에 합류하 여 해외로 밀항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한 동안 수그러졌던 왜구 활동이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때 왜구라고 불려진 해적의 태반이 중국인이 었다. 그들은 일본 해적들과 함께 중국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지에 까지 횡행하였다.

1644년 중국에서는 명조가 멸망하고 청조가 이를 이었다. 명청 교체기의 국내 전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인들에 의한 일본과 동남아 무역은 계속되었다. 한편 명조가 항복한 후에도 해적 출신인 鄭芝龍, 成功 부자는 강력한 船團을 이끌고 臺灣과 福建省 지역에서 계속 청조에 항거하였다. 청조는 이를 정복하기 위하여 1656년에 중국인의 해외도항과 무역을 금지하고 1661년에는 遷界令을 선포하여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해상교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이 大陸封鎖令이 성공하여 1683년에 정씨 집단이 항복하고 이에 따라 천계령도 철회되었다. 뒤이어 1685년에 康熙帝는 해금을 해제하여 중국 상인들의 해외도항과 외국 선박의 중국 來航을 허용하였다. 이 획기적인 일대 英斷으로 비로소 西方諸國과의 무역이정식으로 인정되어 근세 중서무역 발전의 기틀이 구축되었다.

청조의 해금 해제와 함께 寧波・厦門・廣州 등 동남부 연안 各港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상선이 내도했으나 점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조당국은 1757년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무역을 광주 一港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1842년 南京조약에 의하여 5개 항이 개방될 때까지 광동 무역제도가 지속되었다. 광동 무역은 청조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중서간의 독점 민영무역이었다. 청조측에서는 兩廣總督과 廣東巡撫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粵海關 監督이 이를 관장하였다. 이들의 감독 하에 직접 무역에 종사한 것은 廣東 十三行으로 불려진 민간 貿易商社인 洋行들이었다. 양행은 거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광주에 내도하는 유럽상인들과의 무역의 독점권을 취득한 상인 조직이었다. 이를 통칭십삽행이라고 하였으나 그 수는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대충 十三社전후였다.

한편 유럽상인들도 각자 정부에서 동방무역의 독점권을 취득하여 이른바 東印度會社를 조직하여 廣東貿易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광주에 상주한 것이 아니고 청조가 정한 데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광주에 있는 商館 에 머물면서 양행들을 상대로 교역을 하였다. 교역기간이 끝나면 전원이 마 카오로 철퇴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광주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었으며 특히 여자들의 도래는 엄금했다. 또 광주에서는 상관을 떠날

수 없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광동무역 체제가 정비되 18세기 후반에는 많은 유럽국가와 미국이 이에 참가하였는데 모든 면에서 영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15)

이에 앞서 일본의 토쿠가와막부는 이미 17세기 전반에 엄중한 쇄국정책 을 시행하여 유럽과의 무역을 나가사키(長崎) 일항에 제한하고 교역상대는 네덜란드(和蘭) 일국에 한정하였다. 그 규모는 광동무역에 비하여 훨씬 적었 다. 나가사키항 내에 人工 섬에 있는 상관에 화란 동인도회사 사원 수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나 이들 역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으며 자유로운 외출이 나 여행은 엄금되었다. 화란 상선의 도래는 일년에 1. 2차에 제한되었고 그 수는 매번 수 척에 불과했다. 따라서 무역량도 미미한 것이었다. 또 하나 주 목할 점은 나가사키에 있던 화란 동인도회사의 商館長은 5년에 한차례 에도 에 가서 將軍에 배알하고 貢物을 獻上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나가사키 무역도 광동무역과 같이 동아시아적 '조공'무역 성격이 짙 었다. 나가사키에는 막부의 묵인 하에 많은 중국 상인들이 도래하여 일부는 그곳에 상주까지 하였다. 또 매년 나가사키에 도래한 화란상선은 수 척에 불 과했으나 중국상선은 그 수십 배가 되는 70~80척에 달하였다. 이로 보아 토 쿠가와 정권의 쇄국정책은 주로 유럽 국가가 그 대상이었다는 것과 화란과 의 무역이 일본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그다지 큰 비중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6)

(4) 화란과 영국의 진출

16세기 유럽의 동방진출을 주도한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17세기 로 접어들면서 이들을 제치고 화란과 영국이 선두에 나섰다. 원래 화란은 스 페인의 영토였으나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도들이 연합하여 1581년에 스페 인에서 독립한 국가이다. 영국의 동방진출은 초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

¹⁵⁾ 廣東무역제도에 관한 대표적 研究는 梁嘉彬. 《廣東十三行考》(上海: 商務印書館. 1937)가 있다.

¹⁶⁾ 토쿠가와시대 초기 나가사키 貿易제도의 연혁에 관하여는 中田易直,〈十七世紀 初頭の對外交渉〉(沼田次郎 編,《日本と西洋》,東京:平凡社, 1971),97~168零) 참조.

군력의 견제를 받아 활발하지 못했으나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유럽에서 동방과 미주 대륙에 이르는 전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 스페인 양국이 로마교황으로부터 받았던 해외영토와 무역의 독점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개신교 공화국으로 출발한 화란은 동방진출에서 기독교 포교나 식민지 획득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상업활동에 주력하였다. 왕실이나 정부가아니라 상인들이 공동 출자하여 동방무역을 위한 항해를 조직하여 그때그때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각자 고정적인 출자금을 내어 상설 무역기구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것이 근대 주식회사의 효시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화란상인들은 해외진출에서 당시 복잡한유럽의 종교분쟁이나 왕실이나 국가간의 경쟁에 휩쓸려들지 않고 오로지 상업활동에만 전념했다. 또 화란은 이베리아반도와는 달리 좋은 船材가 많이생산되는 발트海 연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대양항해를 위한 조선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하에 전개된 화란의 동방진출은 1602년에 창설된 동인도회사가 주도하였다.

화란 동인도회사는 해외식민지 획득은 원칙적으로 원치 않았으나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광대한 지역의 원주민들을 통제하고 유럽인 경쟁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략적 요지에 기지를 건설하지 않을수 없었다. 먼저 아프리카 남단 希望峰에 식민지를 건설한 다음 1619년에는 바타비아(Batavia)를 동방경영 본거지로 삼았다. 이리하여 본국을 떠난 화란상선들은 희망봉 기지에서 보급을 받은 후 남 인도양을 동으로 횡단하여바타비아로 직행하는 신항로를 개척하여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압도하고 광대한 인도네시아 열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609년에는 일본 쿠슈에 상관을 설치하였다. 1624년에는 명조 말기의 중국 정세가 불안한 틈을타서 대만 북부를 점령하여 1661년에 축출될 때까지 이곳에서 중국 본토에서 건너오는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이와 같이 화란은 17세기 전 시기를 통하여 동방무역에서 우위를 유지하였다. 그후 영국에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으나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300년간 세계 유수의 식민지제국으로 남아있었다.17)

영국이 16세기초에 해외진출을 개시하였을 때는 주로 북미대륙 식민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화란이 동방무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것을 보자이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후 1600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했으나 그 규모는 2년 후에 설립된 화란회사보다 적어서 동남아지역에서는 그 세력에 대항하지 못하였다. 1612년에 처음으로 인도 서해안의 스랫트(Surat)에 상관을 설치한 다음 이어 마드래스 (Madras)와 봄베이(Bombay)에 항만을 구축하고 1633년에는 캘컷다(Calcutta)에 기지를 건설하여 벵갈(Bengal) 경영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에 영국은 주로 인도무역에 종사하였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중국무역을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엽이었는데 厦門・廣州 등지에서 중국산 견직물과 도자기를 수입했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영국은 화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 배후에는 영국 국내경제의 발전이 있었다. 영국은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최초로 이룬 국가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19세기초에는 모방직공업을 중심으로 본격적 단계에 들어갔다. 국내산업의 뒷받침 없이 단순한 중계무역에만 종사하는 화란과는 달리 국내에 산업기지를 갖게된 영국은 경제력과군사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해외 식민지획득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중엽 오스트리아(Austria) 왕위계승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관계에 들어가자 인도에서 양국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1757년 푸렛시(Plassey) 대전에서 영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 프랑스는 인도에서 축출되고 영국의 인도지배가 확립되었다. 인도를 동방경략의 본거지로 만든 영국은 19세기초에는 말레이(馬來) 半島를 장악하여 동방무역에서 모든 유럽국가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중국무역에서는 이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다.

^{17) 17~18}세기 和蘭의 동방진출에 관한 대표적 연구에는 C. R. Boxer, *The Dutch Seabome Empire*, 1600~1800(London: Hutchinson, 1965)가 있다.

¹⁸⁾ 영국 동인도회사와 그 동방진출 역사에 관한 근래의 연구로는 John Keay, *The Honorable Company*: A History of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New York, N. 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1) 참조.

(5) 중영 무역의 변천: 차에서 아편으로

초기에 광주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중국 상품은 주로 견직물과 도자기였으나 17세기 후반부터 중국산 차가 수출되기 시작했다. 유럽 각국, 특히 영국의 상류사회에서 차를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는데 이 때는 주로 화란을 통하여 수입한 것이었다. 그후 청조의 해금이 해제되고 광동무역제도가 확립되자 영국 동인도회사도 이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차의 판매가격이 대폭으로 인하되어 18세기초부터 국내 차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차 수입이 견직물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1830년대부터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大宗이 되었다. 이와 함께 차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영국은 1688년의 名譽革命 이후 지속적인 해외팽창활동을 전개하여 세계 각처에서 막대한 군사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차 관세를 대폭 인상하게 되어 17세기 후반에는 세율이 100%에 가깝게 되고 그 총액은 매년 100만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이와 같은 高關稅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反稅 감정을 증폭시켜 화란을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차의 밀수입을 초래하였다. 결국 영국의 차 소비량 중 영국 동인도회사가 수입한 것은 30~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럽에서 밀수입한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차 밀수입을 위해 매년 약 200만 파운드의 銀貨가 유출되는 형편이었다. 한편 차에 대한 高 관세를 반대하여 일어난 北美 植民地의 反稅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여 급기야 1776년에 13개 植民領이 연합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동인도회사는 막대한 이윤을 상실하였으며 영국은 모든 식민지 중 가장 소중한 북미 식민지를 영원히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전무후무의 역사적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영국은 1784년 과감한 減稅정책을 행하였다. 이해 8월 英國議會는 차 관세를 119%에서 1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목적은 물론 동인도회사의 이윤을 확보하고 영국정부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 무역을 확대시켜 북미대륙에서 상실한 경제적 손실을 동방무역에서 만회하자는 것이었다. 영국의 감세정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즉 1785년 감

세법 시행을 계기로 유럽 각국의 영국에 대한 차의 밀수춤은 완전히 근절되 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의 30% 정도를 취급했던 영국 동인도회 사는 그후 10년 내에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유럽의 대 전란은 이 추세에 박차를 가하여 19세기 초두에는 중국에 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의 90% 이상을 영국이 취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광동무역에서 영국은 유럽제국을 결정적으로 압도하여 전 무역량의 80% 전 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 1785년 감세법이 시행되기 전 10년간 동인도 회사가 중국 차 수입에서 얻은 이익은 연 평균 18만 3천 파운드 정도였는데 그후 10년간에는 매년 58만 파우드를 넘었으며 1793년 이후에는 매년 70만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이와 함께 매년 약 17만 파운드로 예측되었던 영국정 부 茶稅 수입은 30만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증가하는 차 수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를 초래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무역의 일방성이고 또 하나는 당시 국제무역의 決濟慣行이었다. 이미 지적하 바와 같이 中西 무 역은 무역 쌍방이 다같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로 서방제국의 일방 적인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광동무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초과는 매년 증가할 뿐이었다. 당시 국제무역은 모든 거래에서 은화에 의한 현금결 제가 관행이었다. 따라서 매년 막대한 은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서방 무역국들은 이에 필요한 은화 조달에 고심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영국은 자국 상품을 중국에 수 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영국에서는 17세기부터 모방직 공업이 국가경제 의 基軸을 이루게 되고 장차 다가올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자국산 모직 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1693년에 영국의회는 동인도회사에 동방무역 독 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매년 10만 파운드의 영국산 모직물을 동방제국에 수출할 의무룰 부과하였다. 그러나 기후가 溫暖多濕한 인도, 중국남부, 일본 등지에서 모직물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후 중국 洋商들로 하여금 차를 파 는 대가로 일정량의 영국산 모직물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성과 를 거두었으나 영국의 연간 대 중국 수출총액은 중국의 대 영국 수출총액의 1/3에도 못 미쳤다. 1783년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후 신대륙에서 은화조달이 용이하게 되자 영국 동인도회사는 차를 위시한 중국상품 수입을 위하여 매년 200만 파운드의 은화를 중국으로 실어갔다. 이에 인도-중국간의 지방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송금 목적으로 회사에 불입하는 150만 파운드를 합치면 실로 350만 파운드의 은화가 매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 산업투자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국내 기업인들은 동인도회사가 매년 대량의 은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영국의 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하고 국가이익보다 회사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비난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인도회사는 중국무역의 내용 개선을 위하여 1787년에 육군중령 카트카트(Cathcart)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사절단은 중국으로 가는 도중 단장의 사망으로 중도에서 철수하였다. 다음에 파견된 것이 매카트니(Sir George Macartney) 사절단이었다.

외교와 식민지통치에서 요직을 역임한 죠지 매카트니卿이 대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방문 길에 오른 것은 1792년 9월이었다. 이때 중영 간에는 광동무역뿐만 아니라 영국상인들에 대한 중국상인들의 부채, 청조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특히 광주에 거주하는 영국인에 대한 재판권등 懸案이 산적해 있었다. 사절단에 주어진 訓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국내에 차와 견사생산지와 모직물 소비지에 가까운 지역 한 두 곳을 영 국에 割讓하고 그곳에서 영국인의 거주권과 치외법권을 인정할 것.
- ② 광주외에 수개 항을 개방할 것.
- ③ 북경에 영국 공사가 상주하는 것을 허용할 것.
- ④ 광주에서 영국인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폐지할 것.

이를 요약하면 영국과 대등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영국과 그 식민지 산물에 대하여 중국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국력이 크게 성장한 영국의 자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乾隆皇帝 치하에서 사상 미증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매카트니 일행이 天津의 外港인 大沽에 도착한 것은 1793년 7월이었다.

이때 건륭황제는 피서차 勢河離宮에 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카트니는 그 곳으로 가서 9월 14일 황제에 알혂하였다. 청조는 관례에 따라 사절단을 '進 貢使'로 간주하고 때마침 건륭황제 팔순탄신이었기 때문에 이를 경축하는 것 이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후 영국 왕의 서한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아 연실색하여 그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조속히 귀국시키도록 하였다. 매카트 니는 교섭을 시도했으나 청조 당국은 이를 일축하고 10월 7일 북경을 떠나 게 하였다.

이때 건륭황제가 영국왕 죠지 3세에 보낸 '勅書'는 당시 청조 통치계급의 중화사상과 해외무역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흥미 있는 문서이다. 영국의 요구를 모두 거절한 다음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여 '外夷'의 物貨가 필요치 않으나 중국의 차와 자기와 견사는 서방인들의 필수품이니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이를 팔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영국 사신이 定例에 없 는 많은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遠人에 은혜를 加하고 四夷를 撫育하는 道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꾸짖은 다음 '天朝가 萬國을 一視同仁'으로 다스리 는 것이니 영국만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이리하여 광동무 역 제도를 개혁하고 중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영국의 첫 시 도는 완전히 실패하였다.19)

동인도회사의 광동무역에 필요한 은화조달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 이 아편무역이었다. 아편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 은 17세기 초였다고 한다. 이때 화란인들에 의하여 臺灣, 福建省 등지에 유 입되었는데 청초에 해금이 해제되자 연해지방에 아편 유입이 증가했으리라 고 추측된다. 청조가 최초로 아편 禁令을 내린 것은 1729년이었는데 영국 동 인도회사도 이 금령을 존중하여 회사원이 아편을 밀수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1757년 동인도회사가 인도. 벵갈 지방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자 사정이 일변하였다. 동방무역 독점권뿐만 아니라 벵갈 통치권 까지 장악하게 되자 회사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재원확보에 고심하게

¹⁹⁾ 매카트니의 사절단에 관하여는 J. L. Crammer-Bying, "Lord Macartney's Embassy to Peking in 1693," Journal of Oriental Studies, IV: 1-2(1957~58), pp.117~158 참조

되었다. 그리하여 1773년에 이 지방의 중요한 물산인 아편의 專賣제도를 실시하고 1797년에는 그 생산관리까지 하게 되어 아편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즉 아편무역에 의하여 벵갈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고 회사의벵갈 통치자금을 확보하며 중국 상품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문자그대로 一石三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회사가 소량을 직접 중국에 반입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청조의 금령을 고려하여 인도 등남아시아 - 중국무역에 종사하는 이른바 '地方貿易'업자들에 이를 일임키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 벵갈에서 아편전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지방무역 업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은화는 이를 회사에 기탁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도나 영국에서 영국 통화로 환불받도록 하여은화 조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함께 매년 1,000상자(1상자=100斤=133파운드) 전후였던 중국에 대한 인도의 아편 밀수출이 18세기말에는 일약 4,000여 상자로 증가하였다. 그후 1820년까지는 대략 이 수준에 머물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826년에는 10,000상자로 불어나고, 1830년대 초에는 20,000상자를 초과했으며, 1835년에는 35,000상자, 1838년에는 40,000상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편 아편 가격은 상자 당 평균 600~700달러로부터 약 3배로 상승하여 2,000달러를 넘게되고 이를 위하여 지출하는 은화는 3배로 증가되었다. 청조의 禁烟수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아편은 공공연하게 반입되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은화가중국에서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근세 초기 서방무역이 시작된 후 200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중국의 수출초과가 19세기 초부터 줄기 시작하여 아편밀수가 급격히 증가한 1820년대 중엽에는 완전히 수입초과로 역전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은화의 해외유출이 격증하고 중국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편무역은 영국의 해외무역과 인도통치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영국 식민지 통치 초기의 인도에서는 양질의 토산 면직물이 생산되고 그 일부는 영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산업의 발전과함께 면방직 공업은 새로 개발된 기계방직 기술에 힘입어 눈부신 발달을 보게 되고 19세기 초두에는 과잉생산 문제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인도에 판로를 개척하여 값싼 면직물을 대량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手紡織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인도 면방직 공업은 거의 전멸상태에 빠졌다. 이에 동인도회사는 인도 농민들에 아편재배를 권장하고 전 생산량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그들이 수입하는 영국산 면직물의 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아편무역은 인도농민의 수입보장, 인도 통치를 위한 재원확보, 중국 상품 수입을 위한 은화조달뿐만 아니라. 영국 면방직 공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불가결하게 되었다.20)

3) 동서 신국제관계의 성립:불평등조약 체제

(1) 중영 아편무역 분쟁

말한 나위도 없이 중국은 아편무역에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아편 흡연자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 필연적으로 이에 수반하는 도덕기강의 퇴패, 풍속질서의 문란, 국민건강의 악화와 생산력의 감퇴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해독이 급격히 만연하였다. 이에 청조가 당면한 초미의 문제는 증폭되는 서민들의 생활고였다. 당시 중국에서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동전을 사용했으나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반드시 은화로 치러야 했다. 그런데 아편밀수로 인한 은의 해외유출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은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되자 은화와 동전간의 환율이 급등하여 은화 1냥 대 동전 1,000文이던 시장환율이 1,600문 이상으로 올랐다.

이에 청조는 1796년에 아편 흡연을 다시 엄금하고, 1800년에는 그 수입과 국내 재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주로 관원, 과거수험생, 군인들 의 흡연을 금지한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금지령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아편무역은 광주 외항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해역 일대에 걸쳐 성행하였고 영국 및 모든 서방 국가 상인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이때 아편밀수 단속이 북경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20) 17}세기 초부터 아편전쟁 발발 직전까지 中英간이 아편무역 발전에 관하여는 佐 佐木正哉、〈英國と中國:アヘン戰爭への過程〉(榎一雄편, 앞의 책), 358~537쪽 참조.

거두지 못했던 배후에는 담당 관원과 군인들, 특히 廣東水師(海軍) 장병들이 아편 밀수상인들과 결탁하여 이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 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태는 1830년대로 접어들면서 절정에 달하였고. 청조당국이 이 에 대처하는데 고심하고 있을 때 1836년 5월에 太常寺 少卿 許乃濟 등이 아 편 公認論을 제의하자 이를 둘러싸고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공인론의 요지 는 아편무역은 엄연한 현실이니 차라리 아편과 중국 산품과의 물물교환 형 식으로 이를 합법화하여 관원과 군인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의 흡연을 방임 함으로써 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관세 등 국가세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아편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 아편 재배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공인론 자들은 주로 아편무역에서 직간접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던 광동지방의 鄕紳 들이었다. 한때 공인론이 유력하더니 이해 9월에 嚴禁論이 일어나자 대세는 반전했다. 엄금론자들 가운데서 가장 강경론자는 鴻臚寺卿 黃爵滋였는데 그 는 흡연자를 사형에 처하자고 주장하였다. 道光황제는 전국 충독과 巡撫들에 黃의 上奏文에 대한 의견을 하문하였다. 이에 응하여 전부 27통의 회답 상주 문이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전부가 금지론이었고 그중 湖廣總督 林則徐를 비 롯한 8명은 흡연자의 사형을 주장하였다. 이에 청조는 아편밀수와 흡연을 근 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취하게 되었다. 먼저 허내제 등을 降等하여 補職을 박 탈하는 동시에 임칙서를 북경으로 불렀다. 도광황제는 8차에 걸쳐 그를 召見 하여 아편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소상히 들은 다음 1836년 12월 31일자로 그를 欽差大臣에 임명하여 즉각 광동으로 가서 아편문제를 처리하라고 명령 하였다.21)

한편 영국에서는 18~19세기 교체기에 자유무역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운동은 이론적으로는 18세기 후반에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國富論)에서 제창한 '自由放任論'이었으며, 영국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국내 신흥 자본가들이 이를 주도하였고, 의회에서는 휘그(Whig)당이 이를 대변하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영국 동인도회사의 동방무역 독점권의 폐지와

²¹⁾ 아편논쟁에 관하여는 Hsin-pao Chang, *Commissoner Lin and the Opium War*(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pp.85~119 참조.

이에 관련하여 중국시장의 개방 요구가 일어났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 하여 앞장선 것이 동인도회사의 감독 하에 인도-중국간의 '地方貿易'에 종 사하는 영국 상인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아편밀무역에서 거대한 자본을 축적 한 상인들이 많았다. 상술한 매카트니 사절단의 파겨도 바로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다. 동인도회사는 물론 자신의 무역 독점권을 고수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말미암아 영국정부가 다시 중국에 사절단 을 파견한 것은 1816년이었다. 윌리엄 엠허스트卿(Sir William Amherst)을 단 장으로 한 제2차 사절단은 구성이나 목적에 있어서 매카트니 사절단과 대동 소이하였다. 청조는 매카트니 사절단에 대한 것보다 더 고압적인 태도로 엑 허스트에 대하여 황제 앞에서 전통적인 '三跪九叩'예를 치를 것을 요구하였 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자 즉각 북경에서 축출하였다.22)

그러나 영국내의 자유무역 운동은 착착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영국의회는 동인도회사의 무역 독점권을 단계적으로 1813년에는 英本國-印度 간에서 폐지하고. 1823년에는 인도-동남아시아간에서. 1833년에는 마지막으로 동남 아시아-중국간에서 폐지하여 동방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무역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찰스 그레이(Charles Grev) 휘그당 내각은 中 英 무역을 직접 정부 감독 아래 두고 현지에서 영국정부를 대표하고 상인들 을 감독하기 위한 무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고 초대 감독관에 윌리암 네이 삐어(William Napier) 해군대령을 임명하였다.

네이삐어는 1834년 7월에 광주에 도착하여 영국상관에 들어갔다. 그는 兩 廣總督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서하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네이삐어가 당시 광주를 방문하는 모든 서방인들과 같이 먼저 마카오에 들어서 '紅碑'(入港許可)를 받지 않고 직접 광주로 왔으 며, 서방상인들은 중국 관원에 서하을 직접 보내지 못하고 반드시 洋商을 통 하여 '稟'(請願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즉 청조당

²²⁾ 엒허스트 使節團은 그 사명을 달성하는데는 완전히 실패했으나 귀국 후 團員의 한 사람이었던 스타운튼卿(Sir George Staunton)이 집필한 *An Authentic*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King of Great Britain to the Emperor of China(전 2권 1797)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근세 유럽에서의 중국연 구의 효시가 되었다.

국은 네이삐어를 영국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동인 도회사를 대표하는 상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발생한 양측간의 대 립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중국측은 네이삐어의 廣州退去를 요구했으나 응하 지 않자 무역을 정지하고 무력으로 영국상관을 봉쇄하여 식량공급을 중단하 였다. 네이삐어는 결국 9월 하순에 마카오로 퇴거한 다음 10월 11일 그곳에 서 말라리아로 병사하였다.

네이삐어는 죽기 전에 마카오에서 보낸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무력시위를 건의하였다. 그의 砲艦政策 건의는 물론 그 자신의 중국관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중국시장을 개방하고야 말겠다는 현지 영국상인들의 기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공공연히 廣東貿易제도에 도전하고나섰으며 무장선을 동원하여 중국 중부 해역에까지 아편 밀무역을 확대하는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로버트 필(Robert Peel) 保守黨 내각은 아편 밀무역 업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다.

네이뻐어의 사후 죤 F. 데이비스(John F. Davis)와 죠지 로빈슨(George Robinson)이 차례로 무역감독관에 임명되었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현지 영국 상인들 간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 되지 않아 사임하고 로빈손이그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동인도회사 管貨人 출신이었는데 청조당국을 자극하여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절대적인 沈默' 정책으로 현상유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조'정책은 현지 영국상인들의 불평을 샀다. 그들은 양인이 모두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정부는 광동무역의 경험이 없는 인물을 全權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군함을 이끌고 북상하여 직접 북경당국과 담판하여 광동무역 제도를 폐지시키고 북방 諸港을 개방시키라고 요구했다. 결국 로빈손도 파면되고 1836년 7월에 차석 감독관으로 있던 해군대령 챨스엘리어트(Charles Elliot)가 감독관에 임명되었다.

바로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경에서는 아편문제를 둘러싼 대논쟁이 벌어졌으며 광동 현지에서는 아편 밀무역 단속이 강해졌다. 1837년 2월 엘리어트는 이와 같은 현지정세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영국군함을 자주 광동해역에 파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엘리어트의 의도가 이와 같은 시위로 북경에서 대

두하고 있는 아편 금지론을 억제하고 될 수 있으면 아편 공인론을 부활시키 자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이해 9월에 영국국민을 보 호한다는 명분 아래 군함을 중국해역에 파견키로 결정하였다. 다음해 1838년 7월에는 영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이 군함 3척을 이끌고 2개월 이상 광동 해 역에 머물다가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영국 군함이 중국해역에 빈번히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해 말에 광동 欽差大臣에 임명된 林則徐가 북경을 떠 나 이듬해 1839년 3월 10일 광주에 부임하였다. 같은 날 엘리어트는 광주에 있는 英國商館을 떠나 마카오로 갔다.

1785년 福建省 侯官 태생인 임칙서는 1811년에 進土試에 합격한 수재로 내외 요직을 골고루 역임한 후 1837년 湖廣總督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청렴 결백하고 開明的인 사상의 소유자였으며 대표적인 유능한 經世學派 관료였 다. 영국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영국에 압력은 가하되 무력대결은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다.

임칙서가 도임하였을 때 광동성 일대는 삼엄한 상태에 있었다. 전년 10월 말 아편 엄금으로 廷議가 결정된 후 현지에서는 아편 밀무역과 흡연 단속이 갈수록 엄해지고 12월초에는 이미 2,000명 이상이 투옥되어 매일 한 두 사람 씩 처형되고 있었다. 그는 아편 밀매자와 흡연자를 모조리 투옥하였는데 이 일을 부패한 현지 관원이나 서리들에게 맡기지 않고 지방 鄕紳을 동원하여 담당시켰다. 뒤이어 3월 17일에 임칙서는 광주에 있는 모든 외국상인들에 대 하여 그들이 소장하고 잇는 아편 전량을 3일 내로 중국관헌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만일 이를 어기면 아편을 전부 몰수함은 물론 소장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앞으로는 중국에 아 편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그는 중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한 재판권은 마땅히 중국정부가 행사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임칙서의 견해와 주장은 확고부동했으나 그의 태도는 신중하였 다. 그러나 그의 견해와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며 그의 계산에는 큰 오산이 있었다. 첫째, 그는 우유를 常食하는 서양인들은 변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차를 마셔야 한다는 속설을 믿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편무역이 당시 영국경제와 식민지 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가를 이 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영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아편문제만을 분리하여해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中英 무역은 종전대로 계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영국 여왕이나 정부가 아편 밀수업자와 같은 '부도덕한' 장사꾼을 위해 중국과 전쟁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끝으로 그는 당시 淸朝의 거의 모든 관료들과 같이 서방무역이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전면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확신하였다.²³⁾

마카오로 철퇴하여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던 엘리어트는 3월 22일에 모든 英國商船에 홍콩에 집결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24일 마카오를 떠나 광주 英國商館으로 들어갔다. 같은 날 임칙서는 무역정지를 선포하여 영국상 관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중국인 買辦과 雇傭人을 철퇴시켰다. 28일 엘리어트는 임칙서에게 아편을 인도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엘리어트는 후일 중국 정부와의 보상문제에 대비하여 영국 정부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상인들로부터 공식으로 아편을 전량 인수한 다음 4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20,238상자의 아편을 중국측에 인도하였다. 즉 인도된 아편은 상인들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전부가 영국정부 재산이었던 것이며 가격은 총 240만 파운드로 평가되었다. 당시 청조의 엄중한 단속으로 말미암아 아편매매는 중단된 상태였는데 인도의 총 年産額의 반이나 되는 방대한 재고품이 광주에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엘리어트는 이 재고품 전량을 시가로 팔아 넘긴 셈이다. 임칙서는 몰수한 아편에 소금과 生石灰를 섞어서 변질시킨 다음 바다에 버렸다.

아편 인도가 진행되는 동안 상관에 대한 봉쇄는 해제되었으나 엘리어트는 영국인 전원을 마카오로 철거시키고 자신도 5월 4일 그곳으로 갔다. 임칙서는 영국과의 무역재개를 희망하여 그들이 광주로 돌아오도록 권유했으나 엘리어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편 인도 문제는 일단락 지워졌으나 영국측은 앞으로 아편을 중국에 반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은 끝내 거절하였다.²⁴⁾

²³⁾ 위의 책, Chang, Commissioner Lin, pp.120~160.

²⁴⁾ Peter Ward Fay, The Opium War, 1840~1842(Chapel Hill: The University

(2) 중영 개전과 남경조약의 체결

영국인들이 광주를 떠나 마카오로 철퇴한 직후인 1839년 7월 7일 九龍에서 술에 취한 영국 선원들이 林維喜라는 중국 농민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임칙서는 가해자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엘리어트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임칙서는 홍콩에 집결하여 있던 영국 선박에 대한 식량공급을 중단하고 인근 해안지대의 우물에 독물을 투입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엘리어트는 임유희 살해범들을 재판하여 금고와 벌금형에 처했다. 이는 당시 중국이나 영국 형벌에 비하여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임칙서는 8월에 무력으로 마카오를 봉쇄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을 중단하며 그곳에 있던 모든 중국인들을 철퇴시켰다. 마카오에 있던 영국인은 8월말에 대거 홍콩으로 피난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임칙서는 중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법권은 중국이 행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엘리어트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영국민을 위해 연해지역에 중국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설정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그의 일방적인 계획이나 요구를 중국측이 쉽사리 받아들일 리는 만무했고 이 문제는 결국 아편문제와 함께 中英간에 무력대결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이와 같이 양측간에 험악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 4일 엘리어트가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구룡에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관원들과의 교섭이 결렬되고 영국측에서 먼저 발포하여 해안 砲臺와 교전이 벌어졌다. 얼마 후 교역季節이 시작되었는데 엘리어트는 영국상인들은 이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1월 3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영국상선 한 척이 광주를 향하여 珠江 河口에 들어서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영국 포함이威嚇사격을 가하였다. 이때 부근에 있던 중국 艦船들이 영국상선을 보호하기위하여 대응 발포하여 양측간에 포격전이 벌어졌다. 영국군함은 순식간에 중국함선 3척을 격침하고 1척을 대파하였다. 임칙서는 다시 영국에 대하여 무역정지를 선포하였다.25)

of North Carolina Press, 1975), pp.142~161.

이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국정부는 중국에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투보고를 받고 다음해 1840년 4월초에 중국에 원정군을 파견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정부안은 4월 7일 下院에서 9표 차로 간신히통과하였는데, 이때 野黨인 保守黨 의원으로 훗날의 名宰相 윌리엄 그래드스톤(William E. Gladstone)은 이를 반대하여 명연설을 하였는데, "그 원인에 있어서 이같이 부정하고 우리 나라에 이토록 영원한 불명예를 가져올 전쟁을본인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도 없다. … 영국 국기는 바야흐로 불명예스러운 밀무역 보호를 위하여 게양되었다"고 했다. 정부안은 5월 12일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원정군은 이미 6월에 속속 현지에 도착하였는데 그 병력은 육군은 보병 3개 연대, 인도 지원병 1개 연대, 유럽인포병 2개 중대, 공병 2개 중대였으며, 해군은 대포 약 400門을 탑재한 대소군함 10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선박 10척이 참가하였다.26)

현지에 도착한 영국군은 먼저 광주항을 봉쇄한 다음 북상하여 7월 7일에 舟山列島의 定海를 점령하고, 이어 寧波와 揚子江 河口를 봉쇄하였다. 그리고 다시 북상하여 8월 11일부터 天津에 가까운 白河 河口에 있는 大沽에서 北京이 파견한 直隸총독 琦善과 담판을 벌였다. 이때 엘리어트는 英國外相 파머스톤(Henry John Palmerston)이 북경정부에 보내는 공식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長文의 서한에서 파머스톤은 임칙서에 대한 비난공격을 늘어놓은 다음 중국정부에 대한 영국정부의 요구를 열거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몰수된 아편의 대가를 보상할 것.
- ② 엘리어트를 모욕한 자들을 처벌할 것.
- ③ 영국에 대하여 군비를 배상할 것.
- ④ 홍콩을 영국에 할양할 것.
- ⑤ 중국상인들의 영국상인들에 대한 부채를 변제할 것.
- ⑥ 양국 관헌간의 대등한 교제를 인정할 것 등이었다.

²⁵⁾ 위의 책, 162~179쪽.

²⁶⁾ 坂野正高,《近代中國政治外交史》(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73), 162~165\.

이와 같이 주로 임칙서 개인을 비난의 대상으로 한 이 서한은 중국의 강 경책이 임칙서의 독자적인 결정과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영국당국의 견해 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견해는 연쇄적으로 영국정부의 의도에 대 한 청조당국의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였다. 즉 그들은 임칙서만을 처벌하면 영국인들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같은 안이한 판단에 따라 琦善은 엘리어트를 甘言利說로 교묘하게 다루어 현지에서 교섭하자고 약속 하고 우선 그를 광주로 철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청조는 임칙서를 파면하고 기선을 광동 흠차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영국함대에 대한 기선의 상세한 보고에 접하여 비로소 그 실력을 알게 된 북경정계에서는 和平論이 대두했 는데 주로 漢人출신 관료들이 이를 주도하였다. 이들도 청조가 임칙서를 처 벌하고 무역을 재개하고 아편 대가를 배상만 하면 영국은 만족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해(1840) 11월 말 광동 현지에서 기선과 엘리어트 간에 교섭이 재개되 었으나 兩軍 간에 다시 전투가 벌어지고 1841년 1월말에 청조는 정식으로 영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기선과 엘리어트는 양국 간 화평을 위한 잠정협정에 합의를 보았는데, 〈川鼻草約〉으로 불리는 이 假 協定에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영 군은 1월 26일 홍콩을 점령하였다. 2월 26일 이 소식에 접한 북경 당국은 즉 각 기선을 파직하고 그를 문초하기 위하여 북경으로 압송할 것을 명하고 그 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와 같이 청조의 태도가 강경론으로 변한 것은 영국 함대가 천진에서 남방으로 물러가고 화평교섭이 재개되어 영국의 군사적 압 력이 완화되자 북경 정계 내에서 다시 주전론이 대두한 때문이었는데 滿人 출신 고관들이 이를 주도하였다. 또 고조된 광동 지방의 排英 氣運도 이를 부추겼다. 기선이 실각한 후 1841년 8월 영국정부도 군사적으로 영국에 유리 하게 된 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엘리어트를 해임하고 육군대령 헨리 포틴저(Sir Henry Pottinger)를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천비초약〉이 백지화되자 즉각 전투상태에 들어갔으나 때마침 진행중이던 무역을 끝내기 위해 쌍방이 3월 20일부터 일단 停戰한 다음 5월 21일에 다 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후 1주일이 못되어 廣州城이 항락 직전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市 당국이 600만 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고 점령을 면하였다. 8월 중순에 포틴저가 부임하자 영국군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어 8월 26 일에 厦門을 점령한 다음 10월에는 승승장구하여 定海, 鎭海, 寧波를 차례 로 무찔렀다. 영국은 겨울을 지낸 다음 이듬해 1842년 봄에 다시 작전을 개 시하여 5월에는 浙江省 해역을 휩쓸고 북상, 6월 하순에는 상해를 점령하였 다. 여기서 長江을 溯航하여 7월 21일에는 大運河와 長江의 교차점인 鎭江 을 탈취하였다. 이 교통과 전략의 요지를 수비하고 있던 八旗兵 1.600명은 그들 가족과 함께 거의 전멸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유하가 봉쇄되고 江南에 서 북경으로 가는 漕米를 비롯한 중요물자 수송을 위한 대동맥이 절단되었 다. 여기서 英軍은 남경공략의 준비를 시작하고 최후통첩을 발하였다. 그 기 한이 끝나는 8월 14일 南京城頭에 白旗가 올라갔다. 이리하여 양국대표 간에 강화교섭이 시작되어 8월 29일 영국함대 기함 콘윌리스(Cornwallis)號 艦上에 서 근대 국제관계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 남경조약이 조인되었는데 헤 리 포틴저가 영국을 대표하고 欽差大臣 耆英이 청조를 대표하여 이에 서명 하였다.27)

남경조약은 전문 13조로 된 비교적 간단한 조약인데 그 역사적 의의나 중 요성을 이해하려면 후속조치로 중영 양국이 조인한 일련의 추가 협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본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① 廣州, 厦門, 福州, 寧波, 上海 5항을 개방한다.
- ② 公行(洋行)의 무역 독점을 폐지한다.
- ③ 공평하고 정규적인 수출입 관세를 설정 공포한다.
- ④ 개방되는 5항에 영국영사를 상주시킨다.
- ⑤ 중영 양국 관헌은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를 교환한다.
- ⑥ 홍콩을 영구히 영국에 할양한다.

추가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

²⁷⁾ 아편전쟁의 開戰과 戰鬪의 全過程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Fay, *The Opium War*, pp.213~307 참조.

- ① 관세율은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從價 5%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개방되는 5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하여는 영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 ③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最惠國待遇를 부여한다.
- ④ 영국은 개방되는 5항에 군함 1척을 상시로 정박시킬 수 있다.28)

남경조약은 물론 승전국인 영국이 패배한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며, 이는 서방열강이 동아시아 제국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의 효시이다. 여기에는 協定關稅, 領事裁判權, 최혜국대우 등 그후 1세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동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고 경제적으로 약탈하는데 사용된 모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규정의 준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砲艦外交'가 보장되어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놀라운 것은 아편 밀무역이 직접적인 원인이된 전쟁을 종결시키는 조약에 이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청조로서는 물론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편 밀수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하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不正하고 不名譽스러운' 일을 타국에 강요할지언정 이를 공공연하게 조약으로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이를 '不禁之禁'으로 남겨 두었다. 사실 홍콩을 중국주권에서 분리하여 이를 아편무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무역의총 근거지로 장악하게 된 영국에는 아편무역의 합법화 여부는 현실적으로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편전쟁은 결코 아편문제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첫째 19세기 중국인들은 중국은 세계만방의 종주국이고 여타 모든 국가나 민족은 屬邦이나藩屬이며 이 같은 종속체제 하에서 종주국인 중국의 우위는 절대적이라고 믿고 妄自尊大하였다. 한편 영국인들은 모든 국가와 민족은 大小强弱을 막론하고 동등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대등하다고 믿었다. 아편전쟁은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적 세계질서와 영국인들이대표한 서구식 국제질서간의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둘째 농경사회에서

²⁸⁾ 아편전쟁의 종결에 관하여는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vol. 10, part 1에 수록된 Frederic Wakeman, Jr., "The Canton Trade and the Opium War."의 pp.203~208 참조.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 아래 살고 있던 중국의 위정자들은 해외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柔遠'의 정신으로 속방이나 '四夷'에 베풀어주는 恩典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미 근대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영국지도자들은 해외무역은 국가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무역 논자들이었다. 아편전쟁은 중국통치자들의 전통적인 '貿易恩 典論'과 영국 지도자들의 근대적인 '自由貿易論'간의 차이에 기인한 충돌이었다. 또한 아편전쟁은 농경사회중국의 전통적인 '商業輕視'와 '商人賤視'사상과 산업사회로 들어간 영국의 '重商主義'간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둬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다. 아편전쟁은 영국이 자국의 신흥 방직공업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해 印度방직업을 몰락시킨 다음 인도농민들에 아편재배를 권장하여 그 판매권을 독점하고 이를 중국에 무력으로 강제로 수출하여 자국 식민지경제를 구제하는 동시에 더중요하기로는 누적되는 자국의 중국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는 근대문명사회에서는 어떠한 文化差異論이나 자유무역론으로도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도덕성이나 야만성에 있어서 이는 근세초기의 아프리카 奴隷무역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고 하겠다. 아편전쟁이야말로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社會進化論을 신봉한 서구 제국주의열강이 동아시아세계에서 자행한 침략과 약탈의 출발점이었다.

(3) 애로우전쟁과 천진조약 및 북경협정

영국이 아편전쟁에 승리하여 북경조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서방교역국도 뒤이어 청조와 유사한 내용의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 최초가 1844년에 체결된 中美 望厦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문 34조로 되어 있었는데 남경조약과 부수 협정들을 단일 조약으로 종합, 정리한 것이다. 그 특징은 이미 남경조약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중국서적의 수출과중국인 어학교사의 고용 등 이미 관행이 되어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었다. 조인 후 12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새 조항도 첨가하였다.

뒤이어 10월 24일 프랑스가 청조와 中佛 黃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 용은 中美 望厦조약과 크게 다른 바가 없었다. 다만 조약서명 후 프랑스 대 표는 계속 현지 당국과 교섭하여 천주교에 대한 청조의 금령을 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양국간의 명문화된 합의는 아니고 프랑스 측의 요청 에 따라 廣東 欽差大臣 耆英이 천주교 금령을 풀어줄 것을 上奏하여 황제가 이를 허가하였으나 일반에 공포하지는 않고 기영이 그 내용을 전국의 總督 과 巡撫에 전달만 하였다. 그후 이에 만족하지 않는 프랑스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1846년 2월에 道光황제의 上諭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선교사가 중국 내 지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은 계속 금지되었다. 훗날 조선에서 천주교 탄압 이 일어났을 때 駐중국 프랑스 대리공사가 이 상유를 항의의 법적 근거로 삼았다.

청조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 1847년 3월에 스웨덴(Sweden)과 노르웨이 (Norway)와도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망하조약과 완전히 동일한 것 이었다. 이에 앞서 청조는 1845년 7월에 벨기에(Belgium)에 대하여 조약은 맺 지 않고 최혜국대우만을 부여하였다. 그후 러시아가 1848년, 1850년, 1853년 세 차례에 걸쳐 해로를 통한 중국 개항장무역에 참가할 권리를 요구했으나 청조는 러시아에는 이미 육로를 통한 변경무역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청조와 서방국가간에 남경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조약이 체결되 고 1843~1844년에 걸쳐 廣東, 上海, 寧波, 福州, 厦門이 차례로 개방되었다. 이로서 중국의 서방무역에서는 朝貢체제하의 광동무역제도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하는 새 조약체제에 의거한 자유무역제도가 성립되었다. 이는 중국의 대 외관계사상 미증유의 대변혁이었다. 이로써 서방국가들은 과거와 같이 청조 로부터 朝貢國 대우를 받지 않고 중국과 정상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 게 되었다. 또 종전에는 무역이 '天朝의 은전'이었으나 이제는 국가간의 계약 에 의한 '권리'로 보장된 것이다. 또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제 도와 영사재판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특정 국가만이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조항이 설정되었다. 청조가 최혜 국대우 조항을 쉽사리 수용한 것은 '一視同仁'의 정신으로 모든 속방에 대한 은전을 베푼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변혁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조약제도를 당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편법으로 생각하고 이를 광동무역제도의 연장 또는 확대로 간주하여 전통적 조공체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²⁹⁾

이와 같은 양자간의 견해와 태도의 차이는 대립과 알력을 불가피하게 만 들었다. 즉 청조는 항상 이른바 '天朝의 定制'를 회복・유지하려는 반면, 서 방국가들은 조약의 준행을 요구하여 무력행사도 불사하였다. 모든 개항장에 서 그러했지만 특히 광동지방에서 廣州入城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하 게 대립하였다. 원래 광동지방은 反유럽 풍조가 심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가 깝게는 아편전쟁 중 고조되었던 영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으며 멀리로는 근세초기 포르투갈인들의 만행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었다. 남경조약 제2조 에는 영국인이 가족을 동반하고 개항장에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 는데 거주지역을 英文에는 '市와 邑(cities and towns)'으로 표기되어 있고 中 文에는 '港口'로 표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측은 영국인은 '선착장' 부근의 '항구'에서만 거주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영국측은 廣州市內에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영국정부의 태도는 1846년 파머스톤卿이 다시 외상에 취임하자 더욱 강경하여 졌다. 그후 廣東 홈차대신 기영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인의 광주 입성을 허가할 것을 약속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로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결국 1850년에 파머스톤 외상이 이 문제에 관하여 북경당국에 강경한 항의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청조당국은 직접 파머스톤에 회답하는 것을 꺼려서 兩江총독을 시켜 회답 요지만을 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이 문제는 광동흠차대신의 소관사항이니 그와 교섭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홍콩총독 겸 영국 공사 본햄(Sir George Bonham)이 大沽에 군함을 파견하여 영국외상의 항의문에 대한 정식 회답을 요구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청조의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의 배후에는 이때 북경에서는 道光황제가 서거하고 咸豊황제가 등극함에 따라 온건파가 물러가고 아편전쟁 당시의 主戰파였던 강경파가 다

²⁹⁾ 坂野,《近代中國情致外交史》, 180~187\.

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사실이 있었다.30)

이와 같이 남경조약 체결 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북경당국은 영국사절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과거와 다름없이 모든 교섭을 계속 지방관인 광동 총독과 양강총독 관할 하에 두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로서는 북경 중앙정부 당국과 직접 접촉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다. 영국의 또 하나의 불만은 개방된 5항은 모두 양자강 이남에 편재하여 중국의 상업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영무역이 순조롭게 발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중국세관의 부정부패와 비능률적인 운영이 영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부담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파머스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청조에 대해 다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반란인 太平天國의 난이 일어나 청조가 存亡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 영국을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던 중 1851년 12월에 파머스톤이 프랑스에 대한 외교상의 실책으로 내각에서 물러나게 되어 중국에 대한 그의 전쟁계획은 일단 중단되었다. 그러나 1855년 1월에 그는 수상이 되어 정권을 잡게 되자 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할 구실과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때 애로우(Arrow)號 사건이 일어났다.31)

1856년 10월 8일 중국관헌이 광주항에 정박하고 있는 홍콩선적의 중국 화물선 애로우호의 선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체포하였다. 홍콩 총독 죤 보우링 (Sir John Bowring)과 광주영사 해리 파크스(Harry Parkes)는 즉각 兩廣총독葉名琛에 엄중 항의하였다. 그들은 중국관헌이 영국선박에 무단히 登船하여 영국국기를 끌어내리고 선원을 체포한 것은 영국에 대한 모욕이며 불법행위니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체포된 선원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국측은 당시 애로우호는 영국국기를 게양하고 있지 않았으며 애로우호의 선장은 영국인이었으나 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니 중국관헌의 행동은 불법도 아니고 영국에 대한 모욕도 아니라고 반박하여 그들의 항의를 일축하였다.

³⁰⁾ 坂野, 위의 책, 204~211쪽.

³¹⁾ 아편전쟁 이후 애로우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中西관계를 다룬 연구에는 하바드대학의 John K. Fairbank 교수의 고전적 명저,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 1854"(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가 있다.

이때 중국측은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애로우호의 홍콩선적등록은 이미 기한 이 지나서 무효인 상태였다. 양측간의 교섭이 결렬되고 10월 22일 영국군이 광주시를 공격하여 다음 날 한때 총독아문까지 점거하였다. 이같이 영국 측은 사건을 날조하여 강인한 수법으로 전쟁으로 끌고 갔다.

현지 보고를 받자 파머스톤 내각은 즉각 전쟁준비를 시작하고 다음해 1857년 2월 하순에 중국에 대한 원정군파견안을 영국의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상원 토의에서 더비卿(Lord Derby)은 중국인이 소유하고 중국인이 운행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이 전쟁을 해야 할 법적·도의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박했다. 애로우호의 홍콩선적등록이 무효로 된 것을 영국측이 은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리차드 곱덴(Richard Cobden) 하원의원은 이를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리하여 정부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부결되었다. 파머스톤 내각은 즉각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85석 차로 승리하여 전쟁계획을 밀고 나갔다.

원정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대기하고 있던 엘킨卿(Lord Elgin)이 그해 5월 초순에 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을 떠났다. 이에 앞서 영국정부는 프랑스정부에 공동출병을 제안하고 프랑스정부가 이를 수락하였다. 프랑스정부는 그해 2월에 중국 廣西省에서 불법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프랑스인 신부 한사람이 살해된 것을 출병의 구실로 삼았다. 당시 프랑스는 중국과 큰 이해관계는 없었으나 나폴레옹 3세가 천주교의 해외선교활동의 보호자를 자처하여출병했으나 프랑스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월남침략에 있었다. 구로백작(Baron Gros)이 소규모의 프랑스 기동부대를 이끌고 원정에 참가했다.32) 영국원정군이 중국으로 가는 도중 때마침 일어난 세포이(Sepoy)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인도에 들었다가 7월에야 홍콩에 도착하였으며, 양국 원정군 전원이 현지에서 합세한 것은 11월이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청조와의 조약을 개정할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도 홍콩으로 가서 이들과 합류했다. 12월 12일 영불 대표는 兩廣총독 葉名琛에 최후통첩을 보내고 이를 거절당하자 5,700명의 병력으로 28일에 광주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다음날 이를 점

³²⁾ 영불 양국 원정군 파견결정에 관하여는 坂野, 앞의 책, 234~239쪽 참조.

령하고 엽 총독을 사로잡았다. 엽은 인도에 압송되었다가 다음 해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후임 양광총독 黃宗漢은 광주로 가지 못하고 惠州에 머물렀다. 영불군은 광주시에 군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1861년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서 영국 · 프랑스 · 미국 · 러시아 대표는 동일하 내용의 서하을 북경에 보내어 상해에서 조약개정을 위한 교섭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청조당국은 직접 이에 회답하는 것을 피하고 양광총독으로 하여금 英‧美‧佛 삼국 대 표들에는 광주에서 양광총독과 교섭하고 러시아 대표에는 黑龍江 유역으로 가서 그곳 중국관원과 교섭하라고 전달케 했다. 이에 英佛대표는 군대를 이 끌고 북상하여 4월말에 大沽에서 담판을 시작했으나 결렬되고 5월 20일에는 영불구이 대고 포대를 점령하고 천진에 진입하였다. 6월에 가서 청조는 內閣 大學士 桂良과 吏部尚書 花沙納을 흠차대신으로 임명하여 천진에서 비로소 진지한 교섭을 시작했다. 영불대표는 무력을 배경으로 강경한 담판을 벌였으 며 미국과 러시아 대표는 편승하여 中英・中佛・中美・中露 4개의 천진조약 이 체결되었다. 연합군은 황제가 정식으로 이 조약들을 재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천진을 떠났는데, 이때 엘긴卿은 영국원정군을 이끌고 日本 원정길 에 올랐다.

이 4개의 천진조약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최혜국대우조항 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4국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① 체약국의 외교사절은 가족을 동반하고 北京에 상주 또는 수시로 왕래하여 청조의 내각대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대관들과 대등하게 접촉하며. ② 이미 개방된 5港 이외에 牛莊・登州・漢口・九江・鎭江 등 11 개항을 추가로 개방하고. ③ 체약국 국민은 각기 자국영사가 발급하고 중국 관헌이 인준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내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외 에 ④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와 외국인의 선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⑤ 중 국인의 해외도항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등 남경조약에 없었던 조항들이 들어 있었다. 또 청조는 모든 공문서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夷'라는 호칭을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外國人 稅務司를 모든 개항장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세무사는 太平天國의 亂 중 1854년 상해가 한때 비밀결사인 小刀會에 의하여 점령되어 海關업무가 중단되자 영

국영사가 앞장서서 임시조치로 외국인을 세무사로 임용하여 청조를 위하여 판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아 이것을 제도화한 것인데 훗날 이외국인 세무사는 청조의 모든 행정기관 중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또 천진조약에서 청조는 영국에 400만 兩, 프랑스에 2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지불에는 조약항의 관세수입의 40%를 이에 충당키로 하였다.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영불 양국이 천진・등주・대고・광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

천진조약에는 조인 후 1년 내에 북경에서 그 비준서를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불군이 물러가자 북경에서는 조약포기론이 일어났다. 당시 북경정계에서는 외압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강경파의 主戰論이 판을 쳤다. 그러다가 외국의 군사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건파의 화평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그 압력이 극도에 달하면 화평론이 결정적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강화가 성립되고 외국의 군사적 압력이 완화되거나 제거되면 다시 주전론이일어났다. 바로 이때도 그러했다.33) 이해 11월에 상해에서 中英간에 관세협정교섭이 열렸는데 청조는 다시 桂良과 花沙納을 파견하여 천진조약을 파기하면 그 대가로 무역에서 관세를 전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제안을 하라고 훈령했다. 두 사람은 이를 반대하여 그런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조는 북경 대신 상해에서 천진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외교사절을 북경에 상주시키는 권리는 당분간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주었다.

1859년 6월 영·불대표들이 천진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군함을 이끌고 대고에 도착했다. 청조당국은 이들이 대고에 상륙하는 것을 꺼려서 그곳서 16㎞ 북쪽에 있는 北塘에 상륙하도록 통고하였다. 그러나 영·불 함대는 이 통고를 받기 전인 6월 25일 白河 입구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기시작하자 갑자기 대고포대에서 발포하여 이들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간신히 현장에서 탈출하였다. 한편 미국공사는 7월말에 북당에서 조약비준서를 교환하였고 이에 앞서 이미 북경에 와 있던 러시아공사는 그곳서 비준서를

³³⁾ 坂野, 위의 책, 242~250쪽.

교화하였다.

대고사건 후 북경 당국은 영·불대표에 다시 북당을 경유하여 북경에 들어올 것을 권했으나 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조는 8월 1일에 일 방적으로 천진조약의 포기를 선언하고 양강총독 河桂淸을 흠차대신에 임명하여 영·불 양국과 새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비준서는 상해에서 교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국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배상금을 받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이에 영·불 양국 정부는 다시 전쟁준비를 갖춘 다음 다음해인 1860년에 재차 엘진卿과 구로백작을 각자의 전권대표에 임명하고 20,000명이 넘는 연합군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영국이 주었던 使節常駐權 행사를 보유한다는 언질을 취소하고 천진조약의 전면적 이행과 대고사건에 대한 사죄와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를 거절당하자 8월 1일 영·불군은 북당에상륙하여 대고포대를 배면에서 공격하여 이를 쉽사리 점령하고 천진에 진입하였다. 이때 대고포대 砲座는 모두 앞 바다를 향하여 고착되어 있어 적군에대하여 대포 한발도 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포획되었다. 영·불군이 북경을향하여 진군을 개시하자 청조는 천진과 通州에서 담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9월 22일 咸豊황제는 친왕과 軍機大臣, 후궁들을 거느리고 熱河離宮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그 전일인 21일 皇弟인 젊은 恭親王을 흠차대신에 임명하여 북경에 남아 영·불대표와 교섭토록 하고 大學士 桂良과 군기대신 文祥으로 하여금 그를 보좌케 하였다.

10월 6일 연합군은 북경교외에 있는 별궁 圓明園에 침입하여 많은 보화를 약탈했다. 10월 8일 북경성문이 연합군에 개방되고 40여 명의 연합군 포로가석방되었는데 그중 여럿은 학살된 시신이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군은원명원을 불살랐다. 공친왕은 연합군의 최후통첩을 수락하고 24일에 중영 북경협정에, 25일에는 중불 북경협정에 서명하였다. 두 협정은 천진조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이행을 다짐한 것이었는데 새로 추가된 것은 프랑스에대한 배상금이 400만 냥으로 증액된 것과 영국에 조차되었던 九龍이 영구히영국에 할양된 것이다. 영・불대표들은 11월 9일 북경을 떠나 천진으로 물러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청조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다.

60 I. 구미세력의 침투

영·불대표들이 북경을 떠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 공사 니꼴라이이구나체프(Nikkolai Ignatiev)는 공친왕과 11월 14일에 中露 추가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청조는 1858년 5월에 조인된 중러조약을 재확인하여 흑룡강 이북 지역과 그 지류인 松花江에서 동쪽으로 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확인하였다. 이로서 한국의 동북 변강이 직접 러시아와 접경하게 되었다.

천진조약과 북경협정의 조인으로 아편전쟁 후 1842년 남경조약에 의하여 성립된 조약체제가 20년에 가까운 세월에 걸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 확립되었다. 이로서 中西관계에서 전통적인 중국의 조공체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서방열강이 힘으로 강요한 불평등조약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서구주도의 새 체제에는 일본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편입되었으나 유독'隱者의 나라'조선만은 그 테두리 밖에 남아 있었다.34)

4) 일본의 개항과 미국

일본은 1630년대 말 서양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서방무역을 나가사키 (長崎)항에 제한하였으며 교역상대도 和蘭(Netherlands) 한 나라에만 한정하였다. 동시에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엄금하였다. 토쿠가와(德川)막부가 이와 같은 쇄국정책을 취한 배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국내에서 천주교를 근절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해외무역의 이윤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16세기 중엽 아시카가(足利)막부가 극도로 약화하여 국내분열과 내전이절정에 달하자 기존질서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이때 耶蘇會(The Society of Jesus) 선교사들에 의하여 일본에 전해진 천주교는 빠른 속도로 국내에 전

³⁴⁾ 애로우전쟁과 조약체제의 확립에 관하여는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Vol. 10, Part 1, pp.213~263의 John K. Fairbank, *"The Creation of the Treaty System"*과 Immanuel C. Y. Hsu,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The Diplomatic Phase, 1858~1880*(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및 Banno Masataka, *China and the West, 1858~1861": "The Origins of the Tsungli Yame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등 많은 연구가 있다.

파되어 17세기 초에는 그 신도가 수십만에 달하였다. 그러나 다시 전국을 통 일하고 강력한 중앙정권을 수립한 토쿠가와막부는 불교와 토속신앙인 神道 를 반대하고 일본의 전통적 정치체제와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천주교를 축출 하기로 결심했다. 일본의 武人 통치자들은 그들의 권력이 무력에 의거한 것 이며 무력은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 다. 그리고 해외무역이 일본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토쿠가와막부는 '百害 無一利'한 서양의 종교는 이를 엄금하고 군사 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서양무역은 이를 독점키로 했던 것이다.35)

막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단행함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모든 국내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인들의 군사적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200년 간 이 상태는 크게 변함이 없어 이른바 쇄국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으로 접어들 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첫째 일본 국내에서 한때 막강했던 막부의 군사 력은 약화되고 원래 反토쿠가와 성격이 강했던 영주들이 이끄는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둘째 과거 중국과 일본의 '一港무역'제도에 복종했던 서방제국이 대등한 외교와 자유로운 통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산업혁명 을 완성한 영국은 그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아편전쟁에서 청조를 굴 복시키고 중국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서방국가들의 압력하에 쇄국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36)

이에 앞서 18세기 말부터 서양 선박들이 일본근해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 구하기 시작하자 막부는 海防을 강화하여 '異國船'이 접근해오면 물러가도록 권유하여 응하지 않으면 격퇴하라는 명령을 전국에 내렸다. 19세기초에 외국 선의 출몰이 더욱 잦아지자 막부는 이들을 무조건 격퇴하라는 이른바 '無二 念 打拂令'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무모한 대책임을 지적하고 쇄국령 을 철폐하여 서방국가들과 통상해야 한다는 개방론이 일부 개명적 인사들간

³⁵⁾ 德川막부의 천주교 禁敎정책에 관하여는 Jurgis Elisonas, "Chirstianity and Daimyo" in John Whitney Hal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Vol. 4, pp.301~372 참조.

³⁶⁾ 德川시대 말기 일본의 국내정세에 관하여는 William G. Beasely, "The Meili Restoration"(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pp.74~99 참조.

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주로 蘭學者들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漢學, 國學, 蘭學의 三大 학문체계가 있었다. 한학은 막부의 官學으로 程朱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국학은 일본 고유의 전통과 문물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막부의 권학정책에 힘입어 18세기에 들어서 크게 발달하였다. 난학은 곧 '和蘭의 학문'이다. 막부는 천주교를 근절하기 위하여 화란무역을 제외하고는 서양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면서도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관한 서적 특히 의학서적의 수입은 허용하였다. 이리하여 난학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중국이나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난학을 통하여 서양의 과학기술과 근대적군사력을 비교적 잘 알게 된 일본의 난학자들이 서방과의 통상과 문화교류를 주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청조의 廣東무역제도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개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영국이었다. 한편 토쿠가와막부의 쇄국정책을 무너뜨리고 일본을 개방한 주역은 미국이다. 당시 영국은 일본을 보잘것 없는 섬나라로 간주하고 주로 중국시장 개척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사정이 달랐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독립하여 대서양 연안국가로 출발한 미국이 19세기 중엽에는 이미 북미대륙 동서해안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륙국가로 발전하였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낀 해양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른바 '명백한 운명'(the Manifest Destiny)을 확신하고 '서쪽'으로 나아간 미국인들의 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태평양의 광막한 바다로 뻗쳐나갔다. 19세기 중엽에는 미국 捕鯨船들이 이미 일본과 한국해역에까지 진출하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무역을 위한 태평양 항로의 개척이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광동무역에 참가하여 여기서 얻은 이윤을 국내 산업발전에 투자하였다. 초기에는 미국 동해안을 떠난 상선들이 대서양을 건너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19세기 중엽,특히 1848년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탈취한 미국은 그곳에서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직행하는 항로를 개척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서태평양 해역에서 자국 선박의 寄港地를 확보하고 해난시 피난과 구조를 위하여 일본의 개방이 필요했다. 미국이 일본의 개방을 서둘러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에 대한 帝政러시아의 야심이었다. 이미 알래스카에 진출한 러시아는 남

쪽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침투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다같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태평양을 오가는 자국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 중국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세력의 침투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을 개방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이때 미국이나 영국은 일본 자체를 중요한통상 대상국으로 보지는 않았다.37)

아편전쟁 후 5항이 개방되기 시작하자 미국은 1844년에 청조와 望厦조약을 체결하여 중국무역에 박차를 가했다. 1846년 6월 미국 海軍提督 제임스비들(James Biddle)이 통상교섭을 위하여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는 충분한 준비도 없이 군함 2척을 이끌고 東京灣에 나타났으나 막부당국과 정식으로 교섭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는 1852년 1월에 해군제독마듀 페리(Mathew C. Perry)가 파견되었다. 그는 일본 원정을 위하여 치밀한계획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의 원정은 실로 시의에 적절한 것이었다. 만일 수년을 더 기다렸다면 미국은 남북전쟁 前後期에 들어가게 되어 대규모의 해외 원정을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 국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Turkey)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개방 문제에 직접 관여할 겨를이 없었다.

페리제독이 미국 동인도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 도착한 것은 1853년 7월이었다. 후일 강화도에 파견된 일본의 구로다(黑田) 艦隊의 모델이 되었다는 그의 함대는 전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 침공작전에는 부족했으나 무력시위에는 충분하였다. 그는 東京灣 안에 있는 우라가(浦賀)港 앞 바다에 정박한 다음 현지 관헌에게 미국 대통령이 일본 황제에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였다. 그 요지는 근래 많은 미국선박이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왕래하며 일본근해에서 조업하는 미국 捕鯨船이 많으니 이들을 위하여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고 해난시 피난처와 구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日本皇帝'가 일본의 국왕을 말한 것인지 장군을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서한을 전달한 후 페리는 答書를 받기 위해 다음해 1월달에 다시 올 것을 약

³⁷⁾ 曾村保信,《ベリはなぜ日本にきたか》(東京:新潮社, 1987), 101~146쪽 참조.

속하고 일단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페리가 이렇게 한 것은 물론 막부당국으로 하여금 국론을 통일하여 개항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시간을 준 것이었다. 그러나 막부는 당황망조하여어쩔 바를 몰랐으며 일본 전국이 발칵 뒤집혀 '흑선'(미국군함) 4척 때문에 온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국론은 攘夷와 開國(開放)으로 양분되었으나 대다수는 '祖宗의 遺法'인 鎖國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의 요구와 국내여론 사이에서 진퇴유곡의 궁지에 빠진 막부는 토쿠가와일족의 門長인 攘夷論者 토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에 자문을 구하였다. 그는 和蘭에서 무기와 함선을 구입하고 造船기술자를 초빙하며 沿海 방비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장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일본에 승산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때마침 장군이 사망했음을 핑계삼아 페리에 대해 국내사정이 어려우니 미국의 요구에 대한 회답을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막부는 나가사키의 和蘭商館을 통하여이를 페리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그와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막부가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페리는 약속대로 1854년 2월에 8척의 군함을 이끌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막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요구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없었으나 그들은 중국이나 한국 문인 관료들과는 달리 현실주의적인 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서양의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양 과학기술의 실용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편전쟁에서 청조가 당한 패배와 굴욕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이 일본에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막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이면 개항을 지연시키자는 계산이었다. 한편 페리는 외교와 시위를 교묘하게 교대로 사용하였다. 결국 양측은 1854년 3월 31일 美日 和親條約에 서명하였다. 일본이 외국과 최초로 체결한이 조약은 토쿠가와 정권이 200년 동안 견지해온 쇄국정책에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통칭 '카나가와(神奈川)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은 전문 12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간단했다. 즉 東京灣 入口에 있는 시모다(下田)港을 즉시개방하고 1년 후에는 北海道 남단에 있는 하코다대(函館)港을 개방하여 미국

선박의 寄港을 허용하고 식량과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일본측은 개항은 나가사키港에 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는 쇄국체제 하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의 연장에 지나지 않다는 미국측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원래 페리는 미국이 1844년에 청조와 체결한 望夏조약과 같은 폭넓은 통상조약을 희망했으나 일본 국내시장을 고려하여 양국간의 통상에 관하여는 장래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위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조약의 批准기한은 조인 후 18개월 내로 정하였다.38)

한편 영국정부도 일본과 조약을 맺고자 했으나 러시아와의 관계의 악화로 말미암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美日 화친조약 체결 4일 전인 3월 27일 마침내 프랑스·터키와 연합하여 러시아에 대하여 선전포고하였다. 그해 9월 영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스터링(Sir James Stirling) 제독이 군함 4척을 이끌고 나가사키항에 입항하여 현지 관헌에게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제시하고 英佛 함선이 작전목적으로 나가사키항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과 러시아 함선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관헌들이 그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미일조약과 같은 내용의 조약 체결을 제의하자 그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리하여 10월 14일 조인된 것이 英日 화친약정이다. 영일약정을 '條約'이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터링제독이 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이 독단으로 조인하였기 때문이었으나 훗날 조약으로 추인되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동아시아함대 사령관 뿌짜찐(Efim V. Putyatin) 제독은 본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나가사 키항을 드나들고 있었다. 러시아가 영·불 양국과 교전상태에 들어간 후인 1854년 4월 20일 다시 나가사키에 입항하여 현지관헌에 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각서를 전달했으나 영국함대와의 조우를 피하기 위하여 회답도 받기 전에 황망히 그곳을 떠났다. 그후 뿌짜찐은 영·불 함대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일본해역을 돌아다니다가 그해 12월 4일 시모다항에 입항하여 중단되었던 조약체결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3일 돌연히 이 지방을 강타한 지진과

³⁸⁾ 開港교섭과 제1차 美日和親조약에 관하여는 曾村保信, 위의 책, 147~199쪽.

해일로 러시아함대 旗艦이 대파되고 이곳을 엄습한 태풍에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재난으로 중단되었던 러-일 교섭이 근근히 재개되어 다음해 1855년 1월초에 양국간의 修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하코다대와 시모다 兩港과 나가사키에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물품의 공급과 해난시 구조를 약속했다. 또 일본 北海道와 러시아領 쿠릴列島 사이의 국경선을 획정하고 사할린島는 종래대로 러-일 양속으로 했다.

러 의 조약이 조인된 지 약 1년 후인 1856년 1월 30일 화란과 일본간에 화친조약이 체결되었다. 화란은 토쿠가와 시대에 일본이 통상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유럽 국가였는데 새 조약으로 나가사키항 출입이 완전히 자유롭게되었다. 이 외에 다른 항구는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모다항과 하코다대항에서 화란은 다른 조약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³⁹⁾

이상 조약들은 단순한 '和親'조약으로 일본이 그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이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자유로운 통상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쇄국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막부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이 조약들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서양함대와 대전하여 승리할 자신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취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를 사실대로 인정하기가 거북했다. 그래서 막부 당국자들은 이 조약들이 '祖宗의 遺法'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개국론(개방론)을 들고 나섰다. 즉 막부 창건 초기에는 여러 유럽 각국과 무역을 하였는데 후에 가서 화란을 제외하고는 이를 금한 것은 오로지 천주교를 금지하자는 뜻이었으나 천주교만 엄금한다면 무역은 허용해도 조종의 유법에 위배될 것이 없다는 견해였다. 이는 단순히 서양인들이 일본에 도래하여 교역을 하는 것만을 허용하자는 소극론이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인도 해외에 진출하여 무역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서양문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론도 대두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식견이 높고 진보적인 개방론을 편 사람은 사쿠마 쇼

³⁹⁾ 沼田次郎 편,《日本と西洋》의 276~374쪽. 今井庄次〈開國〉、304~309쪽 참조.

잔(佐久間 象山)이었다. 그는 서양 문명에 대하여 높은 지식을 가진 당대 일본의 제일 가는 蘭學者요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는 청조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중국의 학문이 空理空論을 일삼는 한편 서양의 학문은 실사를 연구하고 실리를 추구하여 온 결과라고 논파하고 일본은 모름지기 서양의 탁월한 과학문명을 도입하여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훗날 '和魂 洋才'라고 표현된 근대 일본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대표한 인물이었다. 그에 사사한 젊은 국수주의 유학자 요시다쇼인(吉田松陰)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페리 함대와 함께 서양으로 밀항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투옥, 처형되었다. 이들과 같은 개방론자나진보적인 학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 일본의 지배계급의 압도적인다수는 서방국가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쇄국체제를 고수해야한다는 攘夷論을 주장하였다.(40)

이와 같은 대립 가운데서도 개방론자와 양이론자는 해방의 강화가 일본이 당면한 초미의 급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페리 함대의 근대식 함선의 위력에 크게 놀란 이들은 서양으로부터 함선을 구입하고 그 조선기술을 습득하여 근대식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이에 따라 막부는 1855년 나가사키에 해군 傳習所를 창설하여 화란으로부터 함선을 도입하고 해군 교관을 초빙하여 막부와 各藩에서 선발된 사관생도에 조선기술과 함선조련 훈련을 시작했다. 또 서양의 군사과학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어학 교육을 위하여 1857년에 애도에 蕃書調所라는 語學館을 개설하여 막부뿐만 아니라 각 번의 자제들을 입학시켰다.

한편 미영 양국은 자국 국민이 일본에 거주하며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통상조약체결을 요구하여 1856년 여름부터 그 움직임이 활발해졌 다. 이해 8월초에 나가사키에 온 화란사절이 일본도 세계대세에 따라 자유무 역을 허용하고 일본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며 개항장에 외국인들이 가 족을 동반하여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유하였다. 뒤이어 21일에 미국영

⁴⁰⁾ 佐久間象山과 吉田松陰은 사제간이었으나 전자는 西洋과의 '和親開國'을 주장하고 후자는 '和親攘夷'를 주장하였다. 信夫淸三郎,《象山と松陰:開國と攘夷の論理》(東京:河出書房, 1975) 참조.

사 타운센드 해리스(Townsend Harris)가 시모다에 도착하자 새 통상조약체결을 위한 교섭은 자연 그가 주도하게 되었다. 해리스는 막부 대표와 끈질긴 교섭으로 미국영사로 일본에 상주하는 권리를 획득하여 9월초에 시모다 시내 한 절에 일본에서 최초의 미국 영사관을 개설하였다. 그후 그는 꾸준한 교섭 끝에 1857년 6월에 미일 시모다(下田)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① 시모다항과 하꼬다대항에 미국 상인의 거주와 영사의 주재를 허용한다.
- ② 미일양국 간에 通貨 교환방법을 확정한다.
- ③ 개항장에 있어서 미국인에 대한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시모다 화친조약의 불비점을 보완하는데 그쳤다. 시모다조약조인에 뒤이어 화란과 러시아도 각각 이와 비슷한 추가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시모다조약을 과도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일본의 개방을 위하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상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막부 고위 당국자와 직접 담판하기 위하여 에도 방문허가를 강경히 요구하여 드디어 동의를 얻었다. 해리스는 1857년 11월 23일 시모다항을 떠나 육로로 30일 에도에 도착하였다. 12월 7일 장군 이애사다(家定)를 알현하고 미국 피어스(Pierce) 大統領의 親書를 전달한 다음 12일에는 막부 최고행정수반인 홋따 마사요시(堀田正睦)와 회견하여 세계대세를 설명하고 본격적인 통상조약체결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1월 25일에 시작된 미일회담은 2월 25일까지 계속되어 통상조약과 부속 무역장정 및 稅則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새 조약에 조인하기 전에 교토에 있는 王室의 '勅許'를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토쿠가와시대 일본의 막번체제 하에서는 日本王 (天皇)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 실질적 권력은 없었고 장군이 국내 통치권과 대외외교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였다. 따라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막부가 왕실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그 권력의 기반인 군사력의 약화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능력과 국내세력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한 막부가 조약체결에 대한 '칙허'를

받기로 한 것은 궁여지책으로 그 권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3월초에 칙허를 받기 위하여 老中 홋따가 직접 교토에 갔다. 그러나 攘夷派의 조종 하에 있던 왕실이 막부의 請을 거절하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났다. 홋따는 2개월이나 교토에 머물다가 결국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고 막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교토에서 돌아와서 다시 해리스를 만난 홋따는 그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여 7월 27일에 조약에 조인할 것을 약속했다. 그후 홋따는 老中 자리에서 물러나고 히코내(彦根藩) 領主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가 비상시에만 두는 막부의 최고직인 大老에 취임하여 난국을 담당하게 되었다. 때마침 중국은 英佛양국과 天津조약을 체결하였다. 막부에 이 소식을 전한 해리스는 일본이 중국과 같은 운명을 피하려면 빨리 조약에 조인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이이는 조약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1858년 7월 29일에 왕실의 허가 없이 美日 修好通商조약에 조인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일양국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했다.

- ① 상호 외교관을 상대방의 수도에 주차시킨다.
- ② 시모다, 하꼬다대 이외에 가나가와(神奈川), 나가사키, 니이가다(新瀉), 효고 (兵庫)의 4항을 추가로 개방한다.
- ③ 에도와 오사카(大阪)에 외국인이 商用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다.

이중 시모다는 가나가와 개항 6개월 후에 폐쇄하기로 했다. 이들 개항장은 단순한 보급과 피난구조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위하여 미국인들에 개방되었다. 8월에는 중국에서 청조와 천진조약을 체결한 영국대표 엘긴(Elgin)卿, 프랑스대표 구로(Gros)백작, 러시아 대표 뿌짜찐 제독이 각각 함대를 이끌고 통상조약을 맺기 위하여 에도에 도착하였다. 이외에 화란대표는 이미 7월에에도에 와 있었다. 이들이 막부와 체결한 통상조약은 모두 미일 통상조약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이상 5개 조약에서 일본은 상대국에 대하여 영사재판권을 허용하고, 수출 입품에 대한 협정관세 원칙을 수락하였으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가한 전형적인 片務的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들은 서방국들이 아편전쟁 이후 무력이나 외교적 압력으 로 동아시아 제국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체제의 일환이었다.41)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동아시아 문명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 문명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상이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의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었다. 근세 초기는 물론 19세기 중엽까지도 동아시아는 농경사 회였다. 이에 비하여 유럽, 특히 동방진출에 앞장섰던 지중해 연안국가들은 상업사회였다. 물론 중국에서도 양자강 하류 지역이나 寧波・厦門・廣東 등 남부 해안지역에서나 일본의 北九州. 沂畿지방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으나 상업이 농업을 제치고 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 나 농경지가 부족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던 지중해연안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해상교통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를 주도하였다. 특히 이태리半島 베니스・제노아・프로렌스 등 해안 도시국가들은 이미 13. 14세기에 상업혁 명을 치르고 당시의 유럽경제를 주도하였다. 이들 도시국가의 상업혁명과 이 에 따른 경제적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의 하나가 동방무역이었다. 그런데 초 두에서 지적하 바와 같이 오스만 투르크의 興起와 동로마제국의 멸망으로 동방 무역로가 차단되었다. 근세 초기에 시작된 유럽국가들의 동방진출은 인 도와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여 중단될 위기에 있던 동방무 역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에 직결되는 새 무역로의 개척은 해상루트 발견만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방으로 가는 '大航海(great voyages)'를 조직해야 했다. 이와 같은 인류사상 미증유의 대사업을 위해 과학혁명이 필요한 천문학지식과 항해기술을 제공하였고, 새로 등장한 민족국가의 왕실이 재정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종교개혁이 불러일으킨 천주교의 포교운동이 그 정신적원동력이 되었다. 이 모든 대변혁의 정신적・물질적 원천이 된 것이 이에 앞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중세 후기의 상업혁명과 문예부흥이었다. 이리하여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탐험가, 상인, 선교사들은 동방세계를 향

⁴¹⁾ Beaseley, The Meiji Restoration, pp.98~116.

하여 각각 동으로 서로 떠났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을 정복하여 무 역기지와 식민지를 건설하고 천주교 전파에 노력하면서 마지막 목적지인 동 아시아에 도달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별천지를 발견하였다. 그곳에는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광대한 영토와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즉 '地大物博'을 자랑하는 中華 帝國이 있었으며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階序的인 세계질서를 형성 하고 있는 일련의 문명국가와 문화민족들이 있었다. 이 동아시아세계는 이미 상업혁명을 겪어온 유럽세계와는 달리 폐쇄된 자급자족의 농경사회였다. 모 든 농경사회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사회는 근본성격이 보수적이 었고, 정치는 절대군주에 의한 전제정치였으며, 상인을 천시하는 鄕紳(地主) 이나 세습적인 무사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였다. 이들에는 대외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위정자들에 의한 철저한 간섭과 통제하에 성립된 중국의 광동 무역제도나 일본의 나가사키무역제도는 모두 이러한 동 아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때 유럽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통상제도를 무너뜨릴 만하 힘이 없었다. 따라서 이 체제와의 타 협을 거부한 선교사들은 축출당하고 이에 순종한 상인들은 이른바 '柔遠'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광동무역 제도가 확립된 것은 18세기 중엽이었으며 일본의 나가사 키무역 제도는 이에 1세기 이상 앞선 1630년대 말에 확정되었다. 광동무역제 도는 물론 중국의 華夷사상에 근거한 조공무역체제의 일환이었으며 나가사 키무역 제도 역시 중국의 조공무역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청조는 만방의 종주국으로 자처하고 '地大物博'을 자랑하면서 해외교역은 '天朝'에는 필요 없으나 '柔遠'의 정신과 '一視同仁'의 온정으로 이를 허용한다고 호언장담하 면서 유럽인들을 야만시하여 편견과 차별로 그들의 교역활동에 심한 간섭과 규제를 가하여 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비록 규모는 적 었으나 일본의 나가사키 무역에서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중국이나 일본이 수세기 동안이나 유럽인들에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동서무역은 이에 참가한 유럽 국가들이 추구한 중상주

의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300여 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사태가 변하기 시작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영국의 산업혁명과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자유무역운동이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산업사회에는 그 공업생산을 위한 원료의 확보와 생산품판매를 위한 시장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19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영국경제를 주도한 것은 신흥자본가들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반대하고 동인도회사의 동방무역 독점권 폐지를 요구하여 자유무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성공한 그들은 중국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광동무역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급기야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아편전쟁의 사후처리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급기야 애로우전쟁을 도발하여 기어코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았다. 영국이 중국을 개방하는 동안 미국이 일본의 개방을 선도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개방을 계기로 동아시아세계에서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새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대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을 선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하여 廣東과 나가사키무역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 조약제도를 성립시키는데 두 차례의 전쟁과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1860년대 초까지 중일 양국이 조약체제에 편입된 것은 사실이나 양국이 모두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상징하는 존재가 동방의 隱者 조선이었다. 이리하여 새 조약체제와는 관계없이 이 지역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에는 종래의 제도와 관습이 존속되어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이중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1860년대부터는 조약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는 18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소멸되었고 장구한 역사를 가졌던 동아시아 세계질서는 드디어 막을 내렸다.42)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서방인들에 대하여 '柔遠의 정신'과 '一 視同仁'을 운운하고 '天朝의 恩典'이라고 자랑하였으나 실지로는 편견과 멸시

⁴²⁾ Kim, The East Asian World Order, pp.328~351 참조.

로 그들을 대했으며 온갖 규제로 그들의 행동을 '힘'으로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굴욕과 구속을 반대하여 자유무역운동을 전개한 영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기업인들은 국제외교상의 만국의 평등과 통상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광동무역제도와 나가사키무역제도를 폐지하고 동아시아 제국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문화적 편견과 종교적 독선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하였으며 '불평등조약'제도를 '힘'으로 이 나라들에 강요하여 1세기에 걸쳐 외교통상상의 일방적인 특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미명 아래 아편무역과 같은 엄청난 무법과 부도덕을 자행하였다.

〈金基赫〉

2. 구미 열강의 통상요구

1) 러시아의 통상요구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미 18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즉 1854년 러시아 군함 '팔라타'호는 두만강 어귀에 나타나 수역을 측량하고 다시 남하하여 영흥만을 라자레프(Lazareff)만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迎日灣을 '운코프스키'만으로 명명하였다. 1854년 4월에는 동시베리아총독무라비요프의 지령에 따라 '팔라다(Pallada)'호와 다른 한 척의 러시아함대 '보스토크(Vostok)'호가 다시 조선 동해에 와서 수역을 측량하는 한편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德源郡 龍成鎭과 永興府 大江津에 이르러서는 어민 수 명을학살하는 행위까지 자행하였다.」)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 중국과 러시아가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두만강을 경계로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나서부터이다. 즉 大院君 집정 직후인 1864년 2월에 러시아인 5명이 두만강을 건너 慶興府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文書를 제출하고 회답을 요구하였다. 이

^{1) 《}哲宗實錄》 권 6, 철종 5년 3월 병인.

후 1865년 2월과 9월에도 러시아인들은 국경을 넘어와 각각 통상을 요구하였다. 1865년 11월과 1866년 가을에도 러시아인들은 계속 영흥부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국서를 직접 함흥감영에 갖다 바치겠다고 하였다. 그때마다 조선정부는 외국과의 통상은 지방관헌의 권한 밖의 일이라던가 또는 국교가 없는 외국인의 입국은 허락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국경을 넘어 통상을 요구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났다. 1866년 12월에는 수십 명의 '코사크' 기마대가 다시 경흥부에 와서 교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러시아의 통상요구는 의외의 결과를 야기시켰다. 즉 1866년의 丙寅迫害와 그로 인한 프랑스극동함대의 강화도 원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원군정부가 러시아의 통상요구로 고심하고 있을 때 洪鳳周·金勉浩 등 천주교신도들은 프랑스·영국 등과 동맹을 맺으면 러시아의 통상요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시 국내에 잠입해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도움을받을 것을 대원군에게 권고하였다. 대원군은 선교사 베르뇌(Berneux)를 서울로 불러오도록 하였다. 천주교인들은 당시 선교차 지방에 가 있던 베르뇌주교를 서울로 불러오기로 주선하였으나, 시일을 너무 지체하였고, 또 그 사이러시아의 통상요구는 뜸하여졌다. 한편 조정의 정국은 지금까지 천주교에 대해 호의적이던 상황에서 탄압으로 급선회하였고, 대원군도 더 이상 천주교도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당시 한국에 와 있던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중 9명이 순교를 당하였다. 살아 남은 리텔(Ridel), 페론 (Féron), 깔래(Calais) 3인의 선교사 중 리텔신부가 天津으로 가서 조선에서의 선교사 살해와 천주교도박해의 소식을 전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Roze) 제독은 강화도 원정을 단행하였다.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통상을 요구하면서부터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어 조 선으로 오는 경우가 부단히 계속되었다. 이에 대원군정부는 북경정부에 이러 한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淸國의 總理衙門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 항의할 것 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두만강을 건너 沿海州 방면으로 이주 하였다.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은 개국되었다. 일

본에 의해 개국되면서 조선은 뒤이어 1882년과 1883년에 미국・영국 등 서양열강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영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 1880년 2월 19일 코사크 기마대가 또 다시 두만강 얼음을 타고 경흥부에도착하였다. 그들은 관직을 '코미사(Commissar)'라고 하고 이름은 '마투닌(Matunin)'이라고 불리는 자가 인솔하였으며, 통상문제와 함께 연해주 방면으로의 조선 이민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강화도조약의 내막에 대해물으면서 러시아와의 통상조약체결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의 영토가 넓고 물산이 풍부하여 남의 나라를 엿보지 않으며 여러나라와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려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흥부사는 "우리 나라는 疆界만 지킬 뿐 외교의 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그들의통상요구를 거절하였다.

1881년 이홍장이 조·미 통상조약의 체결을 주선하고 나서자 러시아는 다시 통상교섭을 시도하였다. 즉 러시아는 우수리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조선측에 다시 교섭하되, 전면적인 통상요구는 잠시 제쳐놓고, 우선 조선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한 지방문제부터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의 직접적인 교섭을 하는 대신에 露領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1881년 2월, 李先昌이라고 하는 조선 청년이 위에 언급한 '코미사'의 편지를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 영흥부에 오게 되었다. 이 '코미사'는 이번에 '俄羅斯國 南方于藪理觀察交界官'이라는 신분으로 경흥부사 앞으로 직접 글을 보냈다. 그리고 그 서한은 러시아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조선어로 쓰여진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당시 러시아인들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두 나라 사이에 서로 통보하자는 것과 조선 측에서 러시아 통역이 필요하다면 알선하여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함경감사 金有淵의 보고를 받은 조선정부는 첫번째 요구는 받아들이고 두번째의 통역 관문제는 완곡하게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여 러시아는 지방에

 [《]高宗實錄》 권 19, 고종 8년 2월 27일.
震檀學會、《韓國史 最近世編》(乙酉文化史, 1981), 764~779等.

국한되었지만, 드디어 조선과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882년 5월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뒤이어 한・영, 한・독 조약이 체결되자, 淸國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Cassini)는 재빨리 이홍장에게 조・러 조약체결의 알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던 이홍장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청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1884년 5월 天津주재 러시아 영사 웨베르(K. I. Waeber)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웨베르는 1883년 이홍장이 추천하여 조선정부에 고빙된 외교고문 겸 해 관총세무사였던 묄렌도르프(Möllendorff, 穆麟德)에게 접근하였다. 묄렌도르프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세력을 견제하도록 이홍장에 의해 추천·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조선에 러시아 군사교관을 초빙코자 하는 등 친러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3) 묄렌도르프는 조선 국왕과 대신들을설득하여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맺도록 하였다. 결국 조선정부는 외무독판金炳始를 전권대표에 임명하여 웨베르와 담판하고, 1884년 7월 7일 마침내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듬해 9월 웨베르가 조선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의 자격으로 서울에 파견되었고, 조약의 비준서도 교환되었다.

조·러수호통상조약은 본 조약 13개 조항과 부속조항 즉, 부속통상장정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양국은 정식으로 통상외교대표를 파견하게 되었으며(제2조), 러시아는 조선에서 치외법권(제3조)을 포함하는 막대한 이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제4조에서는 러시아에 인천·원산·부산·서울·양화진을 개방하였으며, 각 개항장에서 러시아인들의 가옥 및 토지임차등 여러 가지 특권들을 규정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상업상의특권, 최혜국 대우, 租借地 설립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사면에서도 러시아 군함이 조선의 '일체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선정부는 한국영해의 측량에 종사하는 러시아 정부에 속하는 선박에 최대의 편리를 허락할 것'을 규정하였다(제8조). 부속통상

³⁾ 高柄翊,〈穆麟德의 雇聘과 그 背景〉(《震檀學會》, 25·26·27, 1964).

장정에서는 선박의 출입항 수속, 화물의 揚陸 및 積載, 관세납부, 세관수입보 중에 대해 러시아의 상업적 특권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 조·러 조약도 다 른 서양열강들과의 조약처럼 러시아의 일방적 권리와 조선측의 일방적 의무 를 규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2) 프랑스의 통상요구

프랑스의 한국접근은 통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傳敎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조선에 처음으로 진출한 서양인 선교사들은 프랑스의 파리外邦傳敎 會員이었고, 이들은 1830년대에 입국하게 되지만, 조선의 천주교는 이미 1784년 창설당시에 북경의 프랑스 선교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프랑스와 조선의 접촉은 1784년 冬至使行의 隨員으로 북경에 갖던 이승훈이 프랑스 예수회 회원들의 北堂에서 천주교에 귀의하여 그라몽(Grammont)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은데서 시작하여 교황청이 1791년에 프랑스인 구베아(Gouvéa)주교를 조선교회의 관리자로 임명함으로써 주로 천주교회를 매개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1831년에는 天主敎朝鮮敎區가 창설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파리외 방전교회에 위임됨에 따라 많은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오고 천주교신자도 그수가 점점 증가하였다.4)

프랑스는 조선정부가 1839년 앵베르(Imbert)·모방(Maubant) 및 샤스땅(Chastant) 등 프랑스 선교사 3명을 살해한 것을 단서로 조선에 군함을 파견하게 되었다. 駐中國・印度 프랑스함대사령관 세실(Cécille) 해군소장은 1846년 5월 海軍省長官에게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한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선과 친선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선에서도 중국의 黃埔條約과 같은 입법기준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 해안으로 가서 조선정부와 교신방법을 모색할 계획임"을 알렸다. 세실 사령관은 클레오파트르(Cléopatre)호를 이끌고 이 해 5월 20일 마카오를 出船, 도중에서 빅토리외즈(Victorieuse)호와 사

⁴⁾ 崔奭祐, 〈韓佛條約체결 이전의 양국 관계〉(《韓佛外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6), 7~8쪽.

빈느(Sabine)호를 합류시켜, 제주도를 거쳐 8월 6일 충청도 洪州 땅 外姻島에 나타났다. 그는 원래 조선의 대신과 면담하고 3인의 선교사 학살에 관해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지 관리에게 國書를 접수시키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해에 조선정부의 答書를 받으러 오겠다고 전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5)

이 때 보여준 군사행동은 '自國敎士를 보호하고 조선 信徒들을 성원'하기위한6) 시위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국서에는 프랑스인 학살에 대한 엄중 問責과 위협적인 言辭가 담겨 있을 뿐 '通交'에 대한 명백한 언급은 없었다.7) 그러나 국서에 밝힌대로 다음 해인 1847년 조선측回文을 받기 위해 古郡山島에 나타난 라삐에르(Lapierre) 대령은 全羅監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프랑스가 이미 淸國과 修好條約(萬年和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자신도 조선과 프랑스 帝國이 수호를 영구토록 맺기를 절실히 원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즉 세실(Cécil)이나 그 자신의 來韓한 의도가 '問責'과 더불어 '通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라삐에르 일행의 군사시위 계획은 그의 두 척의 군함이 모두 고군산도 연해에서 폭풍우로 파괴되어 부근도서에 긴급 피난하였다가 상해서 傭船해 온 영국선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애당초 계획대로 군사적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8)

1866년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중 9명이 살해당하고 조선인 천주교도들이살해되는 丙寅迫害가 일어남으로써 로즈(Roze)제독의 강화도 원정이 단행되었다. 이 원정은 수교나 통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 살해에 대한 보복원정이며 나아가 프랑스제국의 침략적 식민정책 수행의 한측면이다. 즉 프랑스인 선교사학살이라는 종교적 문제를 구실로 군사적 개입을 한 프랑스제국의 '전통적인 군사적 통교 강요의 한 전개'였던 것이다.9 조선원정 문제로 公使代理 벨로네(Bellonet)가 물러나고 랄르망(Lallemand)이

⁵⁾ 崔奭祐, 위의 글, 17쪽.

⁶⁾ 李能和,《朝鮮基督教及外交史》(朝鮮基督教彰文社), 163, 朝鮮與佛國之際, 82至,

⁷⁾ 李元淳. 〈丙寅洋擾 一考〉(《韓佛修交 100年史》, 1986).

⁸⁾ 李元淳, 위의 글, 33~34쪽.

李元淳, 위의 글, 40쪽.
禹澈九、〈丙寅洋擾小考〉(《東方學志》49、연세대、1985).

1867년 5월 駐淸프랑스 공사로 부임하여 또 다시 본국정부에 대해 조선원정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

1875년경부터 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국왕이 친정하면서 開國外交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1876년에는 블랑(Blanc) 외 2명의 신부가 입국하였고 1877년에는 리텔(Ridel)신부가 2명의 선교사를 인솔하고 재입국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때는 이미 朝日修好條約이 체결된 뒤였다. 통상이나 수교보다 국내교도의 재기와 교세부흥에 희망을 품고 활약하다가 다음 해인 1878년 1월에 리텔신부 이하 선교사들이 다시 조선관헌에게 체포・투옥되어 또한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청탁을 받은 일본이 석방권유를 겸한 경고문을 보내오고 또 청국정부에서도 '査明釋放'하라는 조회가 오는 등 국제적인 석방운동의 전개로 말미암아 조선정부는 그들을 석방・송환하였다. 또 1880년에 뮈텔(Mutel) 신부가 리우빌(Liouville)과 같이 황해도로 잠입하여 역시 선교사업을 하던 중 1881년 白川 지방에서 체포되었으나 조선정부에서는 지방관헌의 잘못으로 돌리고 곧 석방하였다.10)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한・영, 한・독간에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프랑스도 서둘러 조선과 조약을 체결코자 하였다. 즉 1882년 6월 5일 조선과의 조약을 체결하고자 天津駐在 프랑스 공사 딜롱(Dillon)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는 駐淸英國公使 윌스(Willes)와 마찬가지로 이홍장의 편지를 휴대하고 왔다. 딜롱이 소개장을 요구하자 이홍장은 마지못해 조선 정부에 대하여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소개장을 써 주기는 했으나 당시 한・영 조약의 체결을 위해 서울에 와 있던 馬建忠이 방해함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건충은 딜롱에게 조선에서 천주교의 전교금지를 주장함으로써 양국간의 조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통킹(東京)문제로 인한 청국과 프랑스간의 관계악화로 청국측이 방해를 한것이다.11) 그런데 歐美 여러 나라들이 통상무역에 목적을 두고 한국과 수교를 한 것과는 달리 프랑스 정부는 信敎의 자유를 중시하였으므로 兩國間에수교에 관한 정식교섭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측은 추방되었던

國會圖書館刊、《舊韓末條約彙纂 下》.86\(\frac{8}{2}\).

¹¹⁾ 우철구, 《19세기 열강과 한반도》(법문사, 1999), 80쪽.

블랑 신부가 1884년 6월에 7명의 선교사와 함께 무난히 입국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信敎의 자유와 함께 선교사의 입국이 묵인된 것 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884년 한・러조약이 체결된 후 1886년 4월에 이르러 다시 꼬고르당(F. G. Cogordan)을 全權委員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도 漢城判尹 金晚植을 全權大臣에 임명하여 5월부터 회담을 개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그 해 6월 4일에 전문 13조로 된 한・불수호통상조약과 통상장정 및 선후속약 등에 조인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887년 4월에 프랑스 全權 꼴랭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가 내한하여 外務督辦 金允植과 더불어 조약비준교환을 완료함으로써 양국간에 정식국교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당분간 駐韓外交업무를 駐韓러시아공사에게 대리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가 선교사업 이외의 일반외교 업무를 중시하지 않은 탓으로 여겨진다.12)

3) 영국의 통상요구

19세기 동아시아에 대한 영국의 주된 관심은 무역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관련된 전략적 측면이다.

영국이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접근은 1875년 강화도사건 이후이다. 일본이 1875년 강화도사건을 일으키자 주일영국공사 파크스(H. Parkes)는 砲艦外交를 구사하여 韓英間에 통상을 조속히 개방하고 巨文島를 점령할 것을 본국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러 나 디스레일리(Disraeli) 보수당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파크스는 독자적 판 단으로 당시 일본에 와 있던 修信使 金綺秀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 하자 군함을 조선으로 보내 정찰케 하고 담판을 시도토록 하였다.13) 파크스 는 1876년 가을에 군함 실비아(Sylvia)호와 스윙거(Swinger)호를 慶尚道 沿岸

¹²⁾ 國會圖書館、《舊韓末條約彙纂、下》、87等.

¹³⁾ 崔文衡, 〈韓英修交와 그 歷史的 意義〉(《韓英修交 100年史》,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49쪽.

으로 보내서 연안을 측량하게 하였다. 1878년 9월에는 영국의 바바라 테일러 (Babara Tayler)호라는 帆船이 제주도 근해에서 난파되자 조선측이 그 선원을 구제해준 데 감사를 표한다는 명목으로 파크스는 長崎領事館員 폴(Paul)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접촉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선원을 구제해 준데 감사를 표한다며 군함까지 끌고 가서 시위를 벌였다. 11월 19일에도 書記官 사토우(Satow)를 한국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파크스의 이러한 시도를 거부하였다.14)

그후 1880년 4월 自由黨의 제2차 글래드스톤(Gladstone) 내각이 등장하고 그랜빌(Granville)이 다시 외상에 취임하자 駐日代理公使였던 케네디(Kennedy)는 조선에 개국을 열망하는 일단의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영국정부가 조선을 개국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굳히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영국의 駐日外交官들은 조선의 개국방침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사토우는李東仁을 통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힘써 수집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조선을 개국시키는데 무력 사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동인은 "한국은 通商上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동 아시아에서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정략적으로는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 나라"라고 하며 일본의 주선을 받아 개국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5] 그러나 영국은 무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조선을 개국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았고 일본도 비협조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영국이 조선을 개국시키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데 있었다.[6]

한・영 수교는 한・미 수교의 경우처럼 이홍장의 역할에 힘입었다. 이홍장이 조선에 대해 개국을 권고한 것은 한반도 내에서 일본과 러시아 세력이 증대되어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李裕元을 설득시키는 말로 "美・英・獨 등과 같은 구미열강과 수교를 맺으면 마치 벨지움(Belgium)이 열강 틈에서 굳건히 독립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14)《}舊韓末條約彙纂》中卷, 309\.

¹⁵⁾ 위와 같음.

¹⁶⁾ 禹澈九,〈19세기 후반 영국의 對韓政策-1883년 한양조약체결을 전후하여〉 (《國史館論叢》, 44, 1993).

훌륭하게 지탱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7)

영국외무성은 한국과의 수교교섭 책임을 아시아 함대 사령관 윌스(Willes) 제독에게 맡겼다. 슈펜트가 1882년 5월 22일 濟物浦에서 마침내 한국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자 윌스는 즉각 神戸領事 아스톤(Aston)과 통역 모드(Maude)를 대동하고 동년 5월 27일 비질랜트(Vigilant)호 편으로 나가사키(長崎)를 출발 조선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한・미 조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馬建忠・丁汝昌 등의 도움을 받아 全文 14개조의 한・영조약이 1882년 6월 6일 제물포에서 체결되었다. 한・영조약은 대체로 한・미조약의 내용과 같았으나 조선의 沿海測量權을 추가로 인정받은 점만이 차이점이었다. 또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려했던 목적은 난과선구제와 통상에 있었던 데 비해 영국은 교역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그 보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한국 침투를 저지하는데 또한 목적이 있었다.18)

월스가 체결한 한・영조약은 영국측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파크스는 한・영조약체결 후 2주만에 이 조약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조잡한 협정"이라고 비판하였다. 한・영조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① 사치품 30%, 생활필수품 10%라는 관세율은 영・일조약(1858)의 그것보다 높으며② 이 조약에는 通商開港場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영국군함의 자유로운 조선항만 출입이 條文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海圖作成權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③ 이 조약은 또한 아편금지규정을 두고 있어 이것이 타국과의 통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 때문에 윌스가 체결한 한・영조약의 비준을 보류하고 새로운한・영조약을 체결케 하였다. 그리하여 1883년 10월에 다시 駐淸英國公使로전임된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파견하여 조선정부의 대표 閔泳穆과 함께 수정을 가한 후 1883년 11월 26일 全文 13조의 한・영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선후속약 3款에 조인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884년 4월 28일 督辦交涉通商事務 金炳始와 파크스 사이에 비준이 교환되었다.

¹⁷⁾ 崔文衡, 앞의 글, 53쪽.

¹⁸⁾ 崔文衡, 위의 글, 54쪽.

4) 미국의 통상요구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미국의 대외정책을 적극정책으로 주도한 국무장판들로서 1840년대의 웹스터(Daniel Webster), 1860년대의 시워드(William Seward) 그리고 1890년대의 헤이(John Hay) 장관을 들수 있다. 그 가운데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1868년 上海총영사 시워드(George F. Seward)에게 조선과 미국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죠오지 시워드 총영사는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에게 셔먼(Sherman)호 사건을 조사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한다는 2개의 목적을 가진 원정을 제의하였다. 그의 제의는 받아들여졌고 새로 부임한 피쉬(Hamilton Fish) 국무장관은 1870년 4월 20일로우(F. F. Low) 북경공사에게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그랜트(Grant) 대통령의서한을 동봉하면서 조선과의 조약체결은 난과선의 구조·보호를 확약하는통상조약으로 할 것과 교섭을 위해서는 제독을 동반하여 무력시위를 하도록 하였다.19) 그러나 이때의 수교교섭은 양국간의 전쟁을 가져온 신미양요로 끝나게 되었다.

1878년 4월(고종 15년 3월) 東洋貿易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캘리포니아(California) 출신의 사전트(Aaron A. Sargent) 의원은 上院에 조선과의 수교교섭 추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일단 부결되었지만 그내용은 당시 미국의 지도급 인사가 조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다. 시전트는 이 결의안에서 조선과의 교섭의 필요성을 난파선원의 구조와 通商 외에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 두고 있다.20)

1879년 미국정부는 슈펠트(Robert W. Shufeldt) 제독에게 조선과의 교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하였다. 미국은 조선과의 교섭을 위해 먼저 일본 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鑿)의 이름으로 釜

¹⁹⁾ 薰德模, 《韓國의 開國과 國際關係》(서울대 출판사, 1980), 52쪽.

韓佑劤、〈Shufeldt 提督의 韓美修好條約交渉推進緣由에 대하여〉(《震檀學報》 24, 1964).

山에 있는 일본 영사에게 슈펠트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 주었고 슈펠트는 이를 가지고 1880년 5월 4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다음날 일본 영사 콘도마스케 (近藤眞鋤)는 東萊府使를 방문하여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美國國書를 중앙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래부사 沈東臣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곤도영사에게 보낸 훈령 중에는 미국사신이나조선정부가 도움을 청하면 '中立'을 지키며 '使事의 성취를 贊助할 것'이며조약은 '困難民 救助'의 사항에 그칠 것이고 통상무역의 문제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目下 安定을 보장하는 길이다. 잘 주의하여 이를 다룰 것"을 다짐하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다.21)

일본의 중재를 통한 교섭이 실패하자 슈펠트제독은 일본으로 돌아가 東京 駐在美國公使 빙햄(John A. Bingham)과 함께 外務卿 이노우에 카오루를 찾아 가 다시 한번 조선과의 수교를 알선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노우에 카오루 는 조선의 예조판서 앞으로 公翰을 발송하여 "宇內의 大勢는 옛날과 달라 금일에는 鎖國이 지켜질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일본이나 청국 모두 알게 되었고, 오늘날 조선이 도모해야 될 일은 저들의 청을 들어주는 일이며, 만 약에 들어주지 않아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다"라고 하였다. 釜山領事 곤도마스케는 이 서한을 예조판서 尹滋承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윤자승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는 金弘集을 통해 이노우에 카 오루에게 西洋諸國과는 통교하지 않는다고 미국과의 수료를 거절하였다. 뿐 만 아니라 미국측 國書는 개봉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빙햄공사는 또 다시 이노우에 카오루 외무경에게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알선요구를 거절하자 淸國이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즉 슈펠트가 나가사키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슈펠트의 나가사키 체류 목적을 탐지한 나가사키 駐在 淸國領事 余瓗이 이 사실을 이홍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홍장은 1880년 7월 24일(고종 17년 6월 18일)부로 슈펠트를 천진으로 초청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홍장의 초청을 받은 슈펠트는 天津으로 가서 8월 26일(음 7월 21일)부터 이홍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이홍장은 한미 교섭

^{21) 《}日本外交文書》 권13, 420~425・426~28\.

을 청국이 알선할 용의가 있음을 약속하였다.

1870년대 말 청국은 강화도조약 체결 후 일본의 한반도 진출과 러시아의 南下를 경계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와 청국은 伊犁국경분쟁 문제로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처하였다. 따라서 청국은 以夷制夷의 책략으로 조선으로 하여금 西洋諸國과 수교토록 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홍장은 1879년 8월 李裕元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이 미국과 수교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유원은 謝恩兼冬至正使 韓敬源을 통해 미국과의 수교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서는 청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일본의 고급관리도 修信使 金弘集 일행에게 기회 있는대로 러시아를 경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1880년에 들어와서는 조선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국과 수교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 까닭은 수신사 김홍집 일행이 동경에 체제하는 동안 駐日淸國公使 何如璋, 參贊官 黃遵憲 등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면서 국제정세, 특히 러시아의 남진위협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일본의 외상도 러시아의 위협에 관해 경고하였다. 특히 황준헌은 〈私擬朝鮮策略〉을 귀국하는 김홍집에게 주었다. 〈朝鮮策略〉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이이제이의 책략으로서 "親中國・結日本・聯美國 하여 防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黃은 〈조선책략〉에서 미국을 영토에 야심이 없는 공평무사한나라이고 타국의 政事에 관여하지 않으며 약소국을 돕는 나라로 소개하였다. 김홍집은 귀국 후 〈조선책략〉을 국왕에게 바쳤고 국왕은 李最應 등 정부의고위 정책 결정자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방금 천하 각국이 合縱하지 않음이 없을 뿐 아니라 我國은 海路要衝에 처하고 있어서 미국과 聯交하는 것이 良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건의하였다. 22) 국왕은 미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李東仁・卓挺埴 등을 비밀리에 何如璋 공사에게 파견하는 등23) 미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

^{22)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9월 8일.

²³⁾ 李光麟, 《韓國史講座》 V 近代編(一潮閣, 1981), 102\(\frac{23}{23}\)

86 I. 구미세력의 침투

내적으로 보수적 유생들은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이른바 위정척사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伊犁國境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청국간에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홍장의 태도도 韓・美 조약체결의 알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결국 1882년에 들어와서 수교를 위한 교섭이 활발하게 진전되어 1882년 5월 20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禹澈九〉